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 실태 등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3. 7.

**국 토 교 통 부
감 사 관**

처분요구서 목차

(단위: 명, 백만원)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계획	인원 (금액)
계	총 5건	시정 1 경고 3 주의 2 개선 3 통보 5	징계 1 경고 21 주의 3
1	승객 보안검색 미 실시 등 항공보안법 위반	경고1	경고1 주의3
2	항공보안검색 인력 운영 부적정	경고1 개선1	경고8
3	항공보안 교육훈련 및 장비 운영 부적정	주의1 통보2	경고8
4	항공보안실패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1 주의1 개선1 통보2	경고4
5	임원 복무관리 등 부적정 및 안전관리비 미반영	경고1 개선1 통보1	인사자료 활용

- 공사에서 관리하는 총 10개 공항 중 10개 공항에서 [표1]과 같이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0건의 보안검색 실패가 발생하였고, 2020년 이후 발생 건수는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표1] “최근 5년간 공항별 보안실패 현황(2019.1.1.~2023.3.31.)”

(단위 : 건)

구분	합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소계	10	10	10	10	10	10	-	-	10	-	10	-	10	10	10
2018	10	10	10	10	10	10	-	-	10	-	10	-	10	10	10
2019	10	10	10	10	10	10	-	-	10	-	10	-	10	10	10
2020	10	10	10	10	10	10	-	-	10	-	10	-	10	10	10
2021	10	10	10	10	10	10	-	-	10	-	10	-	10	10	10
2022	10	10	10	10	10	10	-	-	10	-	10	-	10	10	10
2023	10	10	10	10	10	10	-	-	10	-	10	-	10	10	10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조의2에 따라 [표2]와 같이 3개의 자회사를 설립⁴⁾하여 공항운영, 시설관리, 보안검색, 항공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표2]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현황”

구 분	위탁업무	정 원	자본금	매출액 (10 추정)
10 10 10 10 10 10 (주)	중부권역 공항운영(미화주차 등), 시설관리(토목건축 등)	10명	10억원	10억원
10 10 10 10 10 10 (주)	호남 및 영남권역 공항운영(미화주차 등), 시설관리(토목건축 등)	10명	10억원	10억원
10 10 10 10 10 10 (주)	항공보안검색, 항공경비	10명	10억원	10억원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공사의 보안검색 및 항공경비 업무는 2023. 10.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0(방화동) 국제선청사 100호에 있는 100(주)⁵⁾와 '2023년 항공보안

4) 한국공항공사 자본금 10% 출자로 설립

5) 대표이사 100, 2019. 11. 22. 한국공항공사 자본금 100% 출자로 설립하여 100년부터 공사의 위탁관리 업무 개시

위탁관리' 용역을 총 용역부기금액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탁⁶⁾하고 있다.

2. ♣♣공항 휴대물품 보안검색 미실시 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항공보안법」 제14조 및 「자체보안계획⁷⁾」(공사) 8.4.1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⁸⁾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 「국가항공보안계획⁹⁾」(국토교통부) 8.1.25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검색장별로 보안검색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안검색감독자 업무 기준¹⁰⁾」(공사) 제5조에 따르면 사장은 보안검색감독자에게 현장대리인을 통한 보안 검색현장 운영계획 확인 등 보안검색업무 전반 점검과 보안검색 효율성 관련 점검 등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8조에 따르면 보안검색 감독자는 출발 및 환승 검색장에 대한 보안검색 수행 적정성 여부 감독 활동 등을 한다고 되어 있다.

6) 계약기간 20♣♣. ♣. ♣. ~ 20♣♣. ♣. ♣.까지이며, ♣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7)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고,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2023. 1. 26. 일부개정)

8)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4호, 2021. 11. 22.) [별표1]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는 7종류의 객실내 반입금지 물품과 10종류의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충격기는 기절시키거나 마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로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음

9)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공보안과)이 수립·시행(2022. 12. 12. 일부개정)

10)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따라 보안검색감독자의 보안검색 감독 및 점검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2021. 12. 14. 일부개정)

- 또한, 「항공보안표준절차서¹¹⁾」(공사) 제4장 보안검색 4.5.11에 따르면 보안검색 감독자는 자회사의 근무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절차서 4.5.16에 따르면 일일 근무일지 기록 및 자회사 근무일지¹²⁾(별지5) 확인과 익일 예상승객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절차서 4.7.1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은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무자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4.7.2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은 익일 근무 시 최소 10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갖도록 근무 편성하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근무배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자회사 위탁관리 과업내용서(일반)¹³⁾」(공사) 제26조에 따르면 공사는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X-ray 판독·개봉·신체검색·안내 등 자회사에 위탁한 보안검색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어 보안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보안검색요원에게 최소 10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근무자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1) 공항 보안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 등의 관련법규와 보안기준 및 이행절차 등을 정리하여 항공보안업무 종사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세부절차를 정한 것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수립·시행(2022. 12. 19. 일부개정)

12) [별지5] 보안검색요원 근무일지에는 근무자 명단, 사고자 인원수 및 사고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13) 공사가 자회사에 위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수행할 과업내용의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

○ 그런데 공사에서는 자회사에 위탁한 보안검색 업무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 보안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23. ♣. ♣. ♣시 ♣분 ♣♣공항 국내선 대인검색장(9호기)에서 항공기 객실 내 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전자충격기(1점)가 서류가방에 포함되어 엑스선 검색장비를 통과¹⁴⁾하는 것을 보안검색요원인 ◆◆◆이 X-ray 판독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여 위해물품인 전자충격기(1점)가 보호구역 및 항공기 객실 내에 그대로 반입되어 보안실패가 발생¹⁵⁾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특히 당시 보안검색요원인 ◆◆◆은 보안실패 발생 전일인 2023.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약 8시간 20분간 근무를 하고 「항공보안표준절차서」(공사) 4.7.2에서 정한 최소 휴식시간(익일 근무 시 최소 10시간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¹⁶⁾ 정도의 휴식만 취한 후 다음 날인 2023.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오전근무(대체근무)와 오후근무(본근무)를 연이어¹⁷⁾ 실시하게 되어 보안검색요원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공사에서는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보안검색요원 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공사는 「항공보안표준절차서」 4.7.2에 따르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근무배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색요원에 대해 10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14) X-RAY 판독사진상에는 권총 모양의 물질이 ♣♣♣색으로 나타나 있고, 그 형태 안에 배터리 및 전극 등 구성부품이 ♣♣♣으로 나타나 있음(「항공보안표준절차서」 4.10.2에 따라 판독요원은 엑스선검색장비 판독시 색상별로 식별요령이 있음을 숙지하여야 하고, 플라스틱 등 유기물질은 ♣♣♣색, 배터리 및 금속재질 공구 등의 무기물질은 ♣♣으로 보여지게 됨)

15) 2023. ♣. ♣. ♣♣:♣♣분에 전자충격기 소지자가 ♣♣공항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항 국내선 위탁수하물 D검사장에서 전자충격기 발견, 당일 오전 ♣시♣분에 ♣♣공항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였는데도 이를 확인 못하였음

16) ◆◆◆은 ♣. ♣. ♣시 ♣분에 퇴근하여 자택에 ♣시 ♣분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 ♣. ♣시 ♣분에 자택에서 출발하여 ♣시 ♣분에 사무실에 도착하였다고 진술(2023. ♣. ♣. 문답내용)하였으며, 자택 출퇴근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만 휴식시간을 가짐

17) 대인검색장에서 검색대별로 검색요원 ♣명이 안내, ♣♣검색, ♣♣, ♣♣업무를 ♣분 단위로 순연하여 근무를 실시, ♣♣업무를 ♣분 수행하면 ♣분 이상 간격을 두고 ♣♣업무를 재수행하도록 규정(자체 보안계획)하고 있어, 검색대별로 판독업무에 경험이 있는 보안검색요원이 최소 ♣명 이상은 되어야 검색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판독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이 전일 오후근무, 다음날 오전근무 오후근무까지 연이어서 근무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함

없으며, 보안검색감독자가 자회사 근무일지를 확인하는 것은 근무인원 수 등을 확인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것이며, 개인별 근무시간 적정성 확인은 「자회사 위탁관리 감독지침」에 따른 자회사 관여 금지사항(자회사 종사원 채용, 근무자 배치, 휴가사용 등에 대한 관여)에 해당되어 관리할 수 없고, ♣♣여 명에 이르는 보안검색요원의 대체근무에 대한 적정성 여부까지 보안검색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그러나 엑스선 검색장비 판독업무는 보안검색 절차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중요한 업무로서 승객 및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이 필수적인 점, 보안검색 실패 당시 판독업무를 담당한 요원은 전일 오후 ♣시 ♣분까지 근무한 이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정도¹⁸⁾ 짧은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날 새벽 ♣시 ♣분부터 대체 근무함으로써 집중력 저하 등 검색업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점, 더욱이 보안실패 발생 당일 비번 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전일근무자 이외에도 대체근무가 가능하였던 점과 대체근무 전일 미리 해당 보안검색요원으로부터 근무신청¹⁹⁾을 받는 등 판독업무 인력에 대한 근무배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공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자회사 위탁관리 감독지침」에 따른 자회사 관여 금지사항은 자회사의 적합한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당한 근무자 배치 요구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안검색요원의 휴식시간 확보를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상황을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으며,

18) ◆◆◆은 ♣.♣. ♣시 ♣분에 퇴근하여 자택에 ♣시 ♣분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 ♣시 ♣분에 자택에서 출발하여 ♣시 ♣분에 사무실에 도착하였다고 진술(2023.♣.♣. 문답내용)하였으며, 자택 출퇴근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만 휴식시간을 가짐

19) ☒☒☒은 사전에 미리 ◆◆◆이 대체근무를 신청한 경우라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진술함(2023.♣.♣. 문답내용)

- 「자회사 위탁관리 감독지침」 제12조에서 감독자에게 자회사 종사원의 안전·보건 근로환경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대체 근무자가 많지 않아 휴식시간 확보 여부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안검색요원의 대체근무 적정성 확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부분에 책임이 없다는 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공항 승객 보안검색 미실시 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²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국가항공보안계획」 8.1.1에 따르면 기내 반입금지 물품 등에 대한 탐지를 위하여 모든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이 보안검색 완료구역으로 진입되기 전에 문형금속탐지기(또는 원형검색장비)·엑스선 검색장비·폭발물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계획 8.1.26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통과 및 환승 승객을 포함하여 보안검색을 받은 승객과 받지 않은 승객 간의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접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검색 완료지역 일시 폐쇄 등의 보안통제 후 전면 보안점검 실시와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재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 「자체보안계획」(공사) 7.2.5에 따르면 공사는 항공보안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안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등 보안검색대에서 발생되는 불법 위반사건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유선 또는 문자(SMS)로 보고한 후 지체 없이 부록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보고 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 같은 계획 8.1.25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검색장별로 보안검색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검색장에 배치된 보안검색감독자는 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객위험분석이나 문제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 「자체보안계획」(공사) 9.4.1에 따르면 공사는 환승 또는 통과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 탑승 또는 탑재 전에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계획 9.15에 따르면 공사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환승 및 통과여객을 포함하여 보안검색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승객간 섞임을 인지한 자는 즉시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내부 및 관련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섞임이 발생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일시폐쇄 등의 보안통제 후 해당 지역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다.
- 그리고 「보안검색감독자 업무 기준」(공사) 제6조에 따르면 보안검색감독자는 보안검색 관련 항공보안 규정 등을 숙지하고 보안검색 현장 업무의 감독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8조에 따르면 보안검색감독자는 출발 및 환승 검색장(위탁수하물 검색장 포함)에 대한 보안검색 수행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 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기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검색지역에서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후 보고체계²¹⁾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고, 승객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초동 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사건 발생 즉시 사건 내용과 진행과정 및 결과를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아울러, 「항공보안법」 제50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21) 「항공보안표준절차서」(공사) 12.2.4에 따르면 최초 목격자는 공사 종합상황실로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종합상황실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²²⁾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모든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을 대상으로 X-ray 판독·개봉·신체검색·안내 등의 보안검색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 보안검색장별로 배치된 보안검색감독자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회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하여야 하고, 문제되는 보안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검색요원에게 필요한 지침 제공 및 상황실에 즉시 보고하는 등 보안검색 업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리·감독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공사에서는 자회사에 위탁한 보안검색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보안검색을 받은 승객과 받지 않은 승객 간의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공항 국내선  검색장(4호기)에서 문형금속탐지기²³⁾가 [표3]과 같이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약 8분간 전원이 차단²⁴⁾되어 있었던 사실을 보안검색요원²⁵⁾이 뒤늦게 확인함에

22) 같은 조 단서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23) 「항공보안 표준절차서」(공사) 11.6.1에 따라 자기장을 이용하여 장비에 설정된 감지도를 초과하는 금속물체를 가지고 통과할 때 알람이 발생하는 장비를 말함

따라 항공기 탑승을 위한 승객 ♣명이 보안검색(신체검색)을 받지 않은 채 보안구역으로 진입하여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접촉하는 보안실패가 발생²⁶⁾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3] “보안실패 발생 및 조치 경위”

발생시간	발생상황	관련자 행위
♣:♣~♣:♣ (8분)	검색장비 전원 차단으로 미작동	순환근무 교대중 검색장비 전원코드가 개봉검색요원 발에 걸려 전원이 차단
♣:♣~♣:♣	장비 미작동 상황 전파	신체검색요원이 자회사 현장감독자에게, 자회사 현장감독자는 자회사 팀장에게 보고
♣:♣	보고 (자회사 → 감독자)	자회사 소속 팀장이 공사 소속 보안검색감독자에게 상황 보고
♣:♣~♣:♣ (21분)	보안검색감독자 상황 파악	보안검색감독자가 ♣검색장 4호기 현장 및 열람실에 있는 CCTV 확인
♣:♣	보고 (감독자 → ♣:♣공항 보안관리부)	보안검색감독자가 공사 ★★★★★에게 보안실패사항 보고
♣:♣	대인검색 지시	♣:♣공항 ★★★★★은 직원에게 탑승구 입구에서 전면 신체검색 실시 지시
♣:♣	대인검색 실시	탑승구 입구에서 전면 신체검색 실시

※ ♣:♣지방항공청 조사자료 재구성

- 특히, 당시 보안검색감독자였던 ○○○은 ♣:♣. ♣. ♣. ♣시 ♣분 검색장비 전원차단이 발생한 시점에 정상적인 근무지인 보안검색장에 위치하지 않고 감독사무실²⁷⁾에서 ♣시 ♣분부터 ♣시 ♣분까지 26분간 외부와 차단된 채 대기하고 있다가,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이 문형금속탐지기의 전원 차단 사실을 인지한 ♣시 ♣분보다 10분이 지난 ♣시 ♣분에서야 보안검

24) 개봉검색 근무자 □□□이 순환근무(20분 단위)를 위해 안내근무로 이동 중 문형금속탐지기 전원선이 발에 걸려 빠지면서(본인은 미인지 하였고 진술) 전원이 차단되어 작동하지 않았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문형금속탐지기 상단에 켜져 있던 전원표시등이 ♣:♣분경에 차단되었고, 8분이 지난 ♣:♣분에 신체검색요원 ◇◇◇이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확인

25) ♣:♣:♣:♣(㉸) 소속 ◇◇◇은 당시 신체검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체검색요원은 문형금속탐지기의 알람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알람이 울리면 핸드스캐너로 신체검색 업무를 하고 있음

26)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국내선 대인 ♣검색장 4호기 보호구역 안에서 신체검색을 실시하던 검색요원(♣♣♣, 사원)은 문형금속탐지기 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객 ♣명을 문형금속탐지기로 통과시켰으며, 전원이 차단된 이후 약 1분이 경과한 ♣:♣경 같은 조 검색요원(◇◇◇, 사원)에게 신체검색 업무를 인계 하였고, 업무를 인계받은 검색요원(◇◇◇, 사원)은 그로부터 약 7분간 문형금속탐지기의 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승객 ♣명을 문형금속탐지기로 통과시킨 후 ♣:♣경 문형금속탐지기 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인지

27) 감독사무실은 검색대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이 차단되어 있고 CCTV도 없어 외부로 확인할 수 없어 공사 ♣:♣공항 ★★★★★(○○○)도 보안검색감독자는 부득이한 상황 이외에는 감독사무실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고(202 ♣. ♣. ♣. 문답내용),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에서도 보안검색감독자는 검색현장에서 비정상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문제되는 보안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안검색감독자는 검색장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감독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현장에 배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2023. ♣. ♣.)

색 실패 사실을 보고²⁸⁾ 받는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른 보안검색감독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표4] “사고 당일 보안검색감독자 근무현황”

시간	근무현황	비 고
♣:♣~♣:♣ (55분)	석식	대체근무(◎◎◎)
♣:♣~♣:♣ (22분)	보안검색장과 접한 감독부스 근무	
♣:♣~♣:♣ (65분)	감독사무실 근무	
♣:♣~♣:♣ (14분)	휴게	
♣:♣~♣:♣ (26분)	감독사무실 근무	♣:♣ 보안실패 발생
♣:♣~♣:♣~	사건 인지 후 현장 조치	

※ ♣:♣지방항공청 조사자료 재구성

- 아울러, 보안검색감독자는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안검색요원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상황실에 즉시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표3]과 같이 보안검색감독자 ○○○은 ♣시 ♣분 자회사 소속 △△△ 팀장으로부터 문형금속탐지기 전원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및 CCTV 확인 등을 사유로 21분이 지난 ♣시 ♣분에 ♣:♣공항 보안관리부에 보고하였으며, ♣:♣공항 보안관리부는 이후 15분이 지난 ♣시 ♣분에 항공기 탑승구 입구에서 신체검색을 하도록 지시²⁹⁾하여 자회사에서 전원이 차단되었던 사실을 인지한 시간(♣시 ♣분)보다 57분이 지난 ♣시 ♣분부터 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신체검색을 하였으나, [붙임]과 같이 보안검색을 받지 않은 승객 ♣명 중 ♣명은 신체검색 이전에 이미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안검색을 받지 않은 채 ♣:♣공항을 출발하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28) 자회사 팀장 △△△는 보안검색장에 보안검색감독자가 없어 찾던 중 감독사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함
 29) 공사 ♣:♣공항 ★★★★★ ◎◎◎는 문형금속탐지기 전원이 꺼지고 보안검색감독자가 보안관리부에 보고를 지연하여 40분 정도가 흘러 수천명이 보안구역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함(2023. ♣. ♣. 문답내용)

- 공사는 신체검색요원이 승객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 신체검색 업무 특성과 승객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장비 상단에 위치한 전원 표시 램프가 차단된 것을 즉시 인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보안검색감독자가 자회사 팀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받을 당시 단순 장비장애로 보고를 받았던 점, 당시 검색요원을 즉각적으로 항공기 탑승구 입구로 투입하여 휴대용스캐너 검색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그러나 「항공보안 표준절차서」(공사) 9.6.1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 업무 교대 시 검색장비에 대한 작동상태 정상 여부, 사용 중 문제점 등을 교대자에게 인계인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체검색요원은 문형금속탐지기 점등 상태를 보고 신체검색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문형금속탐지기의 작동상태에 대해서도 상시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안검색감독자 등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자회사 담당자로부터 단순 장애로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안검색감독자는 문형금속탐지기 전원이 차단되었던 시간에 승객이 이를 통과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른 보고 및 보안검색재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현장 및 CCTV 확인 등으로 보고 시간을 지체하여 일부 승객(♣명)은 항공기 탑승구에서조차 검색을 받지 않은 채 ♣♣공항을 출발하여 보안실패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공사에서 검색요원을 즉각적으로 항공기 탑승구 입구로 투입하여 휴대용스캐너로 검색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 ① 승객이나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보안검색 실패 시 사건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안검색요원의 근무 수행 점검 등

보안검색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 ② ♣♣공항에서 발생한 보안검색 실패에 대한 보고를 지연하는 등 보안검색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공항공사 ♣♣공항 ★★★★★ ○○○에게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③ ♣♣공항에서 보안검색(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항공기 내에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반입되게 한 ♣♣♣♣♣(주) ♣♣공항 ★★★★★ ◆◆◆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④ ♣♣공항에서 발생한 보안검색 실패와 관련하여 검색요원의 근무계획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보안검색 감독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및 ♣♣공항에서 발생한 보안검색 실패와 관련하여 검색장비 작동상태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주) ♣♣공항 직원 ◇◇◇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 한국공항공사 ♣♣공항 ★★★★★ ☒☒☒
- 한국공항공사 ♣♣공항 ★★★★★ □□□

[붙임] “♣♣공항 검색장비 미작동시 통과 승객 및 검색 현황(2023. ♣. ♣.)”

연번	목적지	편명	탑승게이트 번호	탑승게이트 체크시간	재검색 여부
1	♣♣	♣♣1326	7번 탑승구	♣:♣	○
2	♣♣	♣♣1326	7번 탑승구	♣:♣	X ³⁰⁾
3	♣♣	♣♣8416	11번 탑승구	♣:♣	X
4	♣♣	♣♣134	9번 탑승구	♣:♣	X
5	♣♣	♣♣614	3A 탑승구	♣:♣	○
6	♣♣	♣♣614	3A 탑승구	♣:♣	○
7	♣♣	♣♣316	1번 탑승구	♣:♣	○
8	♣♣	♣♣736	6번 탑승구	♣:♣	○
9	♣♣	♣♣516	2번 탑승구	♣:♣	X
10	♣♣	♣♣130	3번 탑승구	♣:♣	○
11	♣♣	♣♣130	3번 탑승구	♣:♣	○
12	♣♣	♣♣614	3A 탑승구	♣:♣	○
13	♣♣	♣♣614	3A 탑승구	♣:♣	○
14	♣♣	♣♣1378	5번 탑승구	♣:♣	X
15	♣♣	♣♣1330	5번 탑승구	♣:♣	X
16	♣♣	♣♣1330	5번 탑승구	♣:♣	X
17	♣♣	♣♣406	11번 탑승구	♣:♣	○
18	♣♣	♣♣406	11번 탑승구	♣:♣	○
19	♣♣	♣♣8992	13번 탑승구	♣:♣	X
20	♣♣	♣♣1378	5번 탑승구	♣:♣	X
21	♣♣	♣♣580	12번 탑승구	♣:♣	○
22	♣♣	♣♣8938	7번 탑승구	♣:♣	X
23	♣♣	♣♣8938	7번 탑승구	♣:♣	X
24	♣♣	♣♣8938	7번 탑승구	♣:♣	X
25	♣♣	♣♣8938	7번 탑승구	♣:♣	X
26	♣♣	♣♣810	4번 탑승구	♣:♣	X
27	♣♣	♣♣1378	5번 탑승구	♣:♣	X
28	♣♣	♣♣1374	5번 탑승구	♣:♣	X
29	♣♣	♣♣1374	5번 탑승구	♣:♣	X
30	♣♣	♣♣1374	5번 탑승구	♣:♣	X
31	♣♣	♣♣130	3번 탑승구	♣:♣	○

* ♣:♣~♣:♣(검색 장비 미작동) / ♣:♣(재검색 실시)

※ ♣♣지방항공청 조사자료 재구성

30) 항공기 탑승구 입구에서 ♣♣시 ♣♣분부터 재검색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보안검색 인력 부족 등 사유로 연번 ♣♣번, ♣♣번, ♣♣번은 재검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2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한국공항공사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23. 7.	경고, 개선	경고8	-	-	-

□ 제 목 : 항공보안검색 인력 운영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

-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는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 제34호에 따라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의 관리·운영과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항운영자¹⁾’이며, 「직제규정」(공사) 제5조에 따라 본사 5본부 및 16개 소속기관을 두어 관리 운영하고 있고,
 - ♣♣공항 및 ♣♣공항을 비롯한 ♣개²⁾ 공항에서는 「직제규정시행세칙」(공사) 제3조에 따라 항공안전보안과 관련한 공항경비, 항공안전보안장비 운영, 보호구역³⁾ 관리, 대테러 대응 등의 업무수행과 함께, 항공보안검색과 관련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또는 원형검색장비)·엑스선 검색장비·폭발물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등 항공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공항운영자”란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함

2) ♣♣·♣♣·♣♣·♣♣·♣♣·♣♣·♣♣·♣♣·♣♣·♣♣·♣♣·♣♣·♣♣·♣♣·♣♣·♣♣

3)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

- 한편 공사에서는 「항공보안법」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202♣년부터 자회사인 ♣♣♣♣♣(주)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항공여객 수요 변화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계획 미수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항공보안법」 제5조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항공보안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공항운영자등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국가항공보안계획⁴⁾」6.1.5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등은 보안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 또는 위탁 업체에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규정 또는 지침을 제공하여야 하고, 같은 계획 6.2.1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같은 계획 8.1.31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대에 적정 인원의 항공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여 보안검색업무⁵⁾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계획 8.1.31.1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요원의 휴직, 교육, 병가 등의 결원에 대비하여 적정 인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수의 결원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안검색업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대책을 마련·수립

4) 「항공보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공보안정책과)이 수립·시행(2022. 1. 28. 일부개정)

5) (보안검색 업무) ① 승객 안내 및 휴대물품 엑스선 검색대 투입 유도, ② 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통한 신체검색, ③ 휴대용 금속탐지기 또는 축수검색을 이용한 정밀검색, ④ 엑스선 검색장비 화면 판독 ⑤ 의심이 가는 물품에 대한 축수 또는 개봉검색, ⑥ 폭발물탐지기를 이용한 검색, ⑦ 보안검색장비 정상 작동여부 수시 확인 ⑧ 보안검색 완료구역에 대한 통제

하여 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자체보안계획」(공사) 5.3.2에 따르면 공사 보안계획부(본사)⁶⁾에서는 전국공항 항공보안(보안검색) 기준 및 지침 수립·시행 등을 담당⁷⁾하고 보안관리부(지역본부), 운영부(지사)는 해당 공항경비 및 보안검색 장비, 인원 관리·운영을 담당하도록 업무분장 되어 있고,

- 같은 계획 9.2.7.1에 따르면 공사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의 휴직, 교육, 병가 등 결원에 대비하여 적정 인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수의 결원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안검색업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자회사 위탁관리 과업내용서⁸⁾」(항공보안 위탁관리 분야) 중 일반과업서 제6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종사원 및 현장대리인의 채용·선임 시 특수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인력 및 자격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과업내용서 중 특수과업내용서 제3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공통 및 직무별 필수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기술력 및 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품질저하 또는 안전 및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재확보 및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한편, 2022년 ♣♣공항의 국내선 출발여객 현황⁹⁾은 [표1]과 같이 계절별로 춘계(3월~5월)에는 하루 동안 40,268명이 탑승한 반면 동계(12월~2월)에는 춘계

6) 「직제규정」(공사) 제8조에는 안전보안본부에서는 ① 보안경비·보안검색 등에 관한 업무 ② 전국 항공보안 인력배치 적정성 판단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7) (보안계획과 업무) 전국공항 항공보안(보안검색) 기준 및 지침 수립·시행, 항공보안 중장기 인력계획, 설계기준, 방침 결정

8) 공사가 위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수행할 과업내용의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2022. 2. 23. 일부개정)

9) 춘계·하계·추계·동계의 각 중간월 2번째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대한 탑승객 현황을 조사

대비 56% 수준인 22,638명만 탑승하였고, 요일별로는 2022. ♣. ♣. 화요일에 28,207명이 탑승하였고, 2022. ♣. ♣. 금요일에는 화요일 대비 143% 수준인 40,268명이 탑승하였으며, 시간별로는 2022. ♣. ♣. 06시부터 07시 사이에 2,107명이 탑승한 반면 같은 날 19시부터 20시 사이에는 06시~07시 대비 197% 수준인 4,142명이 탑승하였다.

[표1] “2022년 ♣♣공항 국내선 출발여객 현황”

(단위 : 명)

시간대	춘계(3월~5월)		하계(6월~8월)		추계(9월~11월)		동계(12월~2월)	
	♣.♣.(火)	♣.♣.(金)	♣.♣.(火)	♣.♣.(金)	♣.♣.(火)	♣.♣.(金)	♣.♣.(火)	♣.♣.(金)
합 계	28,207	40,268	28,848	37,303	29,561	40,252	27,845	22,683
06:00~07:00	1,458	2,107	1,157	1,704	1,748	2,244	1,642	536
07:00~08:00	2,428	2,769	2,279	2,492	2,698	2,622	2,340	1,077
08:00~09:00	2,345	2,322	2,121	2,196	2,490	2,716	2,292	1,180
09:00~10:00	2,720	3,329	2,574	2,997	2,297	2,776	1,520	1,798
10:00~11:00	1,726	2,519	2,101	1,441	1,539	2,878	886	972
11:00~12:00	1,426	1,856	1,217	1,912	1,719	1,803	1,850	1,096
12:00~13:00	2,228	2,812	2,595	3,001	2,494	2,525	2,186	1,415
13:00~14:00	2,514	2,849	2,076	2,832	2,122	3,084	2,067	1,612
14:00~15:00	1,822	2,653	2,056	2,093	1,934	2,702	2,266	1,871
15:00~16:00	2,307	2,724	2,081	3,220	2,356	3,218	2,500	1,802
16:00~17:00	1,603	3,292	1,603	2,429	1,516	2,224	1,007	1,645
17:00~18:00	746	2,161	1,439	2,189	1,252	2,342	912	934
18:00~19:00	1,535	2,539	1,831	3,241	1,633	2,818	2,193	2,401
19:00~20:00	2,029	4,142	2,158	3,180	2,046	3,568	2,464	1,996
20:00~21:00	972	1,092	1,062	1,456	1,102	1,554	1,186	1,534
21:00~22:00	348	1,102	498	920	615	1,178	534	814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춘하추동 중간월 ♣번째주 화, 금요일 기준)

- 아울러, 탑승객 및 수하물 검색을 위한 보안검색요원의 근무경력별 분포는 [표2]와 같이 평균적으로 ♣년 미만은 15.76%이고, ♣년 이상¹⁰⁾은 72.29% 수준이나, 각 공항별로는 ♣년 미만 경력자 비율은 최소 0%에서 최대 40% 까지, ♣년 이상 경력자 비율은 최소 20%에서 100%까지로 운용되고 있는

10)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교관의 자격·경력 등은 항공보안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항공훈련기관,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교관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등 공항별로 근무경력 등에 따른 운용 인력의 편차가 발생¹¹⁾하고 있다.

[표2] “공항별/근무경력별 보안검색요원 인력 배치 현황(2♣.♣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합계 (명)	근무경력					
		♣년 미만		♣년 이상 ~ ♣년 미만		♣년 이상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합계	996	157	15.76%	119	11.95%	720	72.29%
♣♣	292	47	16.10	32	10.96	213	72.95
♣♣	203	16	7.88	22	10.84	165	81.28
♣♣	297	52	17.51	35	11.78	210	70.71
♣♣	41	10	24.39	4	9.76	27	65.85
♣♣	45	14	31.11	7	15.56	24	53.33
♣♣	22	6	27.27	-	-	16	72.73
♣♣	12	1	8.33	2	16.67	9	75.00
♣♣	27	3	11.11	5	18.52	19	70.37
♣♣	12	-	-	3	25.00	9	75.00
♣♣	15	2	13.33	4	26.67	9	60.00
♣♣	9	1	11.11	2	22.22	6	66.67
♣♣	8	-	-	-	-	8	100.00
♣♣	5	2	40.00	2	40.00	1	20.00
♣♣	8	3	37.50	1	12.50	4	50.00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따라서, 공사는 적정 숫자의 검색대를 개방하기 위하여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급격하게 달라지는 항공 이용객의 변화 상황과, 휴직·교육·병가 등 결원을 감안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력 운용계획 수립 시 보안검색요원의 근무경력 등도 감안하여 공항별로 근무경력 등에 따른 검색요원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검색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11) 근무경력별 보안검색 요원 배치 현황(2♣.♣월 기준)

구분		근무경력					
		♣년 미만		♣년 이상 ~ ♣년 미만		♣년 이상	
공항 평균	100%	15.76%	11.95%	72.29%			
♣공항	100%	40.00%		40.00%		20.00%	
♣공항	100%	100%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공사에서는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변화하고 있는 항공 이용객 변화 상황이나 검색 인력 결원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표3]과 같이 단순히 근무가능 인력으로 보안검색대 운영¹²⁾ 및 인력 배치 등을 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는 경우 검색인력 부족 및 업무 집중력 저하로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보안검색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3] “202♣년 계절별 일일 탑승객 대비 보안검색 인력운영 현황(♣♣공항)”

(단위 : 명)

시간대	춘계(3월~5월)		하계(6월~8월)		추계(9월~11월)		동계(12월~2월)	
	♣.♣(火)	♣.♣(金)	♣.♣(火)	♣.♣(金)	♣.♣(火)	♣.♣(金)	♣.♣(火)	♣.♣(金)
탑승객(a)	28,207	40,268	28,848	37,303	29,561	40,252	27,845	22,683
검색인력(b)	195	195	204	202	194	186	203	201
검색요원 1인당 평균 승객수(a/b)	145	207	141	185	152	216	137	113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표2]와 같이 공항별로 보안검색요원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여 검색 인력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교대근무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보안검색요원의 근무체계 특성상 근무 인력이 적은 소규모 공항의 경우 업무 숙련자 등의 추가 결원 발생 시 비숙련자 중심으로 근무 조가 편성·운용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공항별로 업무 경력을 감안한 적정 비율의 인력 배분 등을 통한 초임자부터 중간 경력자를 거쳐 숙련자로 이어지는 보안검색 인력 운용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여 향후 보안검색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12) ♣♣공항 국내선 보안검색대는 ♣개 POST로 ♣개 전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관리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보안검색 인력 부족으로 통상 근무인력에 따라 ♣~♣개 Post만 운영

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공사는 항공보안 자회사 운영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운영 등에 대해 꾸준한 검토를 해왔고 항공보안 적정인력 운영 검토를 위해 주관부서와 사업부서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별 적정한 보안검색 인원배치·운영 등은 관계부처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여 202♣년 ♣월까지 적정 인력 검토 및 자회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자회사 경영진단 용역 결과 등을 위탁관리계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공사는 자회사인 ♣♣♣♣♣(주)와 202♣년부터 용역을 통해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현재까지 공항별, 계절별 등 항공여객 수요 등에 적합한 항공보안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보안실패가 지속적으로 증가¹³⁾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가 꾸준히 검토를 해왔다는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적정한 보안검색대 운영 및 보안검색 인력 등 합리적인 항공보안 인력운영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공사에서는 보안검색요원의 경력 불균형 해소는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의 우려가 있고, 자회사 노조 반대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다만 직원들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상벌점 제도, 모자(母子) 회사간 소통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 공항운영자인 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과 항행안전 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검색요원 경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13) 보안검색 실패 ♣년 ♣건 → ♣년 ♣건 → ♣년 ♣건 → ♣년 ♣건

인력 운영계획 수립은 공항운영자로서 공항공사의 본연의 업무수행에 해당하여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기는 어렵고,

- 「자회사 위탁관리 감독지침」(공사) 제14조 제1항에서 감독자¹⁴⁾는 자회사의 적합한 과업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회사 종사원 채용, 징계·해고, 근무자 배치, 휴가사용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여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회사의 적합한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당한 인사 관여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인력 운영계획 수립을 제한하는 것까지로 확대 해석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 또한, 이번 감사 지적에 따라 보안검색요원의 경력 불균형 현상을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 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공사와 자회사 간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단계적 방식의 중장기 조치계획 마련·운영 등도 가능하고, 특히 이번 감사처분이 항공보안 업무 수행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운영을 통한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 확보라는 기본원칙에 배치되지 않으며, 자회사 노조의 반대 등 사유가 이러한 기본원칙보다 우선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항공보안 위탁용역 인력 투입 부적정 및 정산 미시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항공보안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14) 「자회사 위탁관리 감독지침」(공항공사) 제3조에 따르면 “감독부서”라 함은 소관업무에 대한 자회사 위탁관리 계약의 이행관리 및 총괄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감독자”라 함은 감독부서의 장으로부터 자회사 위탁관리 분야의 계약 이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국가항공보안계획」4.2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보안조치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고, 「자체보안계획」¹⁵⁾(공사) 1.2.15에 따르면 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보안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국가항공보안계획」1.3.2에 따르면 공사로부터 보안검색, 보호구역 출입통제, 항공보안장비 등 항공보안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보안계획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계획 8.1.31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대에 적정 인원의 항공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15) 「항공보안법」 제10조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함(202♣. ♣. ♣.)

-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¹⁶⁾라고 되어 있으며,
- 「자회사 위탁관리 계약 및 운영예규」(공사) 제5조에 따르면 주관부서¹⁷⁾의 장은 분야별 위탁분야 필요 인원, 장비구매 등에 대한 예산 적정성 검토를 사업부서¹⁸⁾에 의뢰하고, 해당 검토결과 및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위탁관리 예산(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202♣. ♣. ♣. 공사가 자회사와 계약 체결한 “202♣년 항공보안 위탁용역”에 따른 「자회사 위탁관리 과업내용서」 제7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¹⁹⁾는 총정원 한도 내에서 공항의 특성 및 공항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근무인원과 근무방법 등의 인력운영계획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 후에 확정하여 과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 특수과업내용서 제4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자회사 업무와 단절되거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정시근무 이외의 휴일 및 시간외 근무 시에는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근무조를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결원발생으로 인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근무인원 및 방법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무현황과 작업내용을 근무일지에 정확히 기록하고 통계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에서는 항공보안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가 차질 없이 보안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7항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17) “주관부서”라 함은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출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본사 담당부서로 자회사 위탁관리를 위한 설계 및 계약, 품질평가 등 과업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함

18) “사업부서”라 함은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출자회사가 수행하는 고유목적의 사업을 담당하는 본사 관련부서를 말함.

19) 「자회사 위탁관리 과업내용서」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란 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회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에 따른 적정 인원의 보안검색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계약된 인력보다 부족하게 투입되는 경우 자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통해 이를 반영하거나 계약 만료 시 실제 투입 인력에 맞게 정산할 수 있도록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공사에서는 ♣♣공항의 경우 [표4]와 같이 202♣년 ♣분기부터 202♣년 ♣분기까지 위탁계약된 인원(♣♣명~♣♣명)보다 최소 10명에서 최대 39명까지 부족하게 투입되고 있는 등 분기별로 최소 18명에서 최대 84명까지 검색인력이 부족²⁰⁾한 상태로 검색업무가 수행되고 있는데도, 계약상대자인 자회사로 하여금 근무체계 개편이나 결원 충원 등을 통하여 계약에 따른 보안검색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표4] “♣♣공항 보안검색 투입 인력 현황(202♣.♣.♣.~202♣.♣.♣.)”

연도	계약기준 정원(명)	♣분기		♣분기		♣분기		♣분기	
		현원	과부족	현원	과부족	현원	과부족	현원	과부족
20♣♣	♣♣	♣♣	Δ33	♣♣	Δ33	♣♣	Δ24	♣♣	Δ32
20♣♣	♣♣	♣♣	Δ21	♣♣	Δ25	♣♣	Δ24	♣♣	Δ17
20♣♣	♣♣	♣♣	Δ10	♣♣	Δ21	♣♣	Δ28	♣♣	Δ39
20♣♣	♣♣	♣♣	Δ33		-		-		-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기별 중간월 ♣일 기준)

20) “자회사 항공보안검색 현원 현황(“20~’23.3)”

연도	계약인원	자회사 항공보안검색요원 현원							
		♣분기		♣분기		♣분기		♣분기	
		현원	과부족	현원	과부족	현원	과부족	현원	과부족
20♣♣년	♣♣♣	♣♣♣	Δ68	♣♣♣	Δ81	♣♣♣	Δ56	♣♣♣	Δ39
20♣♣년	♣♣♣	♣♣♣	Δ27	♣♣♣	Δ39	♣♣♣	Δ18	♣♣♣	Δ45
20♣♣년	♣♣♣	♣♣♣	Δ41	♣♣♣	Δ44	♣♣♣	Δ84	♣♣♣	Δ49
20♣♣년	♣♣♣	♣♣♣	Δ39	-	-	-	-	-	-

※ ♣♣♣♣(♣) 제출자료 재구성(최종계약 및 분기말 현원 기준)

- 또한 공사에서는 202♣. ♣. ♣. 자회사의 독립적인 예산 운용 및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자회사의 결원 발생과 상관없이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년 자회사 위탁관리 제도 개선 및 계약체결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공사 사장의 방침²¹⁾을 받은 후, “202♣년 항공보안 위탁용역”부터는 자회사의 보안검색 인력 결원 등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거나 정산하지 않은 채 고정비²²⁾ 형태로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공사에서는 자회사 직원의 연차, 병가 및 공가 등으로 인한 사고인원 발생 시 대체근무를 하도록 계약금액에 변동비로 반영하였으나, 자회사에서는 채용기간이 길어지고, 보안검색요원 이직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계약인원 대비 결원이 지속 발생하였으며, 연차 등 사고인원에 대해 노조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체근무를 미시행 또는 부족하게 실시하고 있어 공사에서는 보안검색 인력 유지를 위해 ① 현장감독부서에서 자회사에 적정 인력 운영 요청, ② 검색대 등 POST 유지를 및 인력 운영률을 자회사 “사장경영실적평가” 등에 포함, ③ 2023년 계약시 보안인력 등을 임의 축소시 정산 조건 명시, ④ 자회사에 단기인력 운영 요구, ⑤ 2022년 적정 정원 검토를 위한 전문가 합동 현장 조사 2회 실시 등의 노력을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만, 위와 같은 노력과는 별개로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는 현시점에도 현장 인력이 계약인원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202♣년 ♣월부터 보안인력에 대한 여유율을 반영하여 보안검색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금년도 내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항공보안 위탁현장을 대상으로 적정 정원 재산정 등 항공보안 위탁관리 인력운영 체계 전면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1) 보안검색 인력 인건비를 정산이 불가한 고정비로 반영하여 투입 인력이 적을수록 자회사 이익은 확대되는 구조로 설계

22) 「자회사 위탁관리 계약 및 운영예규」 제15조에는 위탁관리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 부가가치세로 구성하며, 고정비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변동비는 고정비 외에 공항운영상 위탁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검색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내부 사정 등으로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공사의 주장은 ① 그간 본사 용역 계약부서나 보안검색 인력 관리부서에서 자회사의 보안검색 인력 확보와 관련한 대안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② 공사에서 자회사에 요구한 단기인력은 보안검색 안내 업무만 가능하여 보안검색 업무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점, ③ 202♣년에 실시한 전문가 합동 현장 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이 202♣년도 자회사 위탁용역 계약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공사에서 추가로 제시한 의견대로 조속한 보안인력 확보 조치 및 항공보안 위탁관리 인력운영 체계 개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 ① 항공여객 수요, 보안검색요원 결원 및 근무경력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안검색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항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검색인력 운영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② 앞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에서 과업 내용에 따른 적정 인원을 보안검색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 보안검색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 ③ 적정 수준의 보안검색인력 배치를 위한 인력운영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항공보안검색 인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

- 한국공항공사 ★★★★★ ■■■■
- 한국공항공사 ★★★★★ ●●●(現 ★★★★★)
- 한국공항공사 ★★★★★ ▣▣▣▣(現 ★★★★★)

④ 항공보안 검색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정산 조치를 하지 않도록 방침을 받고 부족 인력에 따른 추가인력 필요 여부 검토 없이 계약하는 등 자회사 위탁관리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

- 한국공항공사 ★★★★★ ●●●(現 ★★★★★)
- 한국공항공사 ★★★★★(직무대리) ▣▣▣▣(現 ★★★★★)
- 한국공항공사 ★★★★★ ◆◆◆
- 한국공항공사 ★★★★★ ▼▼▼(現 ★★★★★)
- 한국공항공사 ★★★★★ ▷▷▷(現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3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한국공항공사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23. 7.	주의, 통보	경고 8	-	-	-

□ 제 목 : 항공보안 교육훈련 및 장비 운영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

-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공항운영자 및 보안검색 교육기관¹⁾으로서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보안계획(공사)」 및 「국가민간항공 보안 교육훈련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1]과 같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1] “최근 ♣년간 항공보안검색요원 교육훈련 현황(20♣♣.♣.♣.~20♣♣.♣.♣.)”

(단위 : 회수, 명)

구분	합계		초기교육		정기교육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합계	263	5,268	19	367	244	4,901
20♣♣	64	1,605	8	152	56	1,453
20♣♣	64	1,112	1	12	63	1,100
20♣♣	59	1,002	2	21	57	981
20♣♣	58	1,043	3	46	55	997
20♣♣	18	506	5	136	13	370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1) 한국공항공사는 200♣.♣.♣.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됨

- 또한, 「정관」(공사) 제2조의2에 따라 공항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 ♣. ♣. 자회사인 ♣♣♣♣♣(주)²⁾ 및 201♣. ♣. ♣. ♣. ♣♣♣♣♣(주)³⁾(이하 “자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2020. 1. 1.부터 매년 자회사와 공항시설 위탁관리 용역⁴⁾을 계약 체결하여 공항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⁵⁾를 자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2. 항공보안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등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되,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교육훈련 규정에는 ①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 ② 교육과정 종류, ③ 과정별 내용 및 교육시간을 포함한 교육 요약 시간표, ④ 각 과정별 교육 최소 이수 요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정은 담당 직무에 따라 초기교육(Initial Training)⁶⁾, 직무교육(On-the-Job Training)⁷⁾,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⁸⁾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길 70, ♣♣지원센터 2♣♣-2,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지분율 ♣♣%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입로 ♣08, ♣18, ♣00호,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지분율 ♣♣%

4) ♣♣♣공항서비스 : ♣♣권역 공항시설 위탁관리(♣♣, ♣♣, ♣♣, ♣♣, ♣♣, ♣♣시설본부, ♣♣항공교통시설단)
- ‘20년 ♣♣억원, ‘21년 ♣♣억원, ‘22년 ♣♣억원, ‘23년 ♣♣억원

♣♣공항서비스 : ♣♣ 및 ♣♣권역 공항시설 위탁관리(♣♣, ♣♣, ♣♣, ♣♣, ♣♣, ♣♣, ♣♣, ♣♣)
- ‘20년 ♣♣억원, ‘21년 ♣♣억원, ‘22년 ♣♣억원, ‘23년 ♣♣억원

5) 「자회사 위탁관리 과업내용서」 중 특수과업내용서 제2조(내용적 범위) : 미화, 카트, 의전, 안내, 방송, 영접, 수위, 유실물관리, 고객만족센터, 주차, 구내도로 질서유지, 통합주차 지원센터, 직원식당, 토목조경, 장비정비, 건축, 기계, 플랜트(급유), 탑승교 운전, 환경, 전기, 통신, 항공등화, 조류 충돌예방, 순환버스

6) 항공보안 관련 신규 또는 최초 임명자 등에게 직무 부여하기 전에 직무와 관련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

7)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업무의 시범 및 관찰과 실제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

8) 소관 업무 내용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등은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보안 의식 제고와 보안업무 능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같은 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제3조제1항의 교육대상자가 속한 공항운영자등은 제8조에 따른 교육 중 해당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보안 검색감독자 및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지침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이 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부터 별표 8에 따른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등을 이수한 후에 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표 8의3의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별표 8 및 8의3에 따르면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초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최소 40시간 이상,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 1회 8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같은 지침 제1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의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 과정은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정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 「항공보안교육센터 교육운영지침」(공사) 제25조에 따르면 교육센터장은 별표 4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평가시에는 시험문제 출제, 난이도 등이 해당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가는 100점 만점에 이론 및 실기를 포함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공사에서는 202♣년도 이후 보안검색 실패 등 항공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⁹⁾하고 있고,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시설의 피해 발생과 공항 운영체계 혼란 및 경제적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보안업무 능력향상 등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위해물품(危害物品) 판독 등 항공보안검색 분야에 특화된 특별교육과정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도, 202♣. ♣. ♣. 감사일 현재까지 무기·폭발물, 그 밖에 위해물품을 발견하기 위한 X-ray 등 항공검색장비 전문 판독 교육과정 등 항공보안업무 특별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용하지 않고 있다.

- 또한,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 과정은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정하여 교육을 이수¹⁰⁾한 것으로 하고, 평가 시 시험문제 출제, 난이도 등이 해당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최근 ♣년간 전체 교육 총인원 대비 평균 합격자 비율(이하 "합격률"이라 한다)이 [표2]와 같이 99.2% 수준에 달하는 등 교육과정 수료를 위한 평가의 변별력 확보나 교육과정 이수의 적정성 판단 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표2] "최근 ♣년간 항공보안검색요원 교육훈련 평가 현황(20♣♣.♣.♣.~20♣♣.♣.♣.)"

(단위 : 명, %)

구분	합 계				초기교육				정기교육			
	총인원	합격	불합격	합격률	총인원	합격자	불합격	합격률	총인원	합격자	불합격	합격률
소계	5,268	5,227	41	99.2	367	351	16	95.6	4,901	4,876	25	99.5
20♣	1,605	1,592	13	99.2	152	146	6	96.1	1,453	1,446	7	99.5
20♣	1,112	1,112	0	100.0	12	12	-	100.0	1,100	1,100	-	100.0
20♣	1,002	1,002	0	100.0	21	21	-	100.0	981	981	-	100.0
20♣	1,043	1,031	12	98.8	46	43	3	93.5	997	988	9	99.1
20♣	506	490	16	96.8	136	129	7	94.9	370	361	9	97.6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9) ♣년 ♣건 → ♣년 ♣건 → ♣년 ♣건 → ♣년 ♣건

10) 평가는 100점 만점에 이론 및 실기를 포함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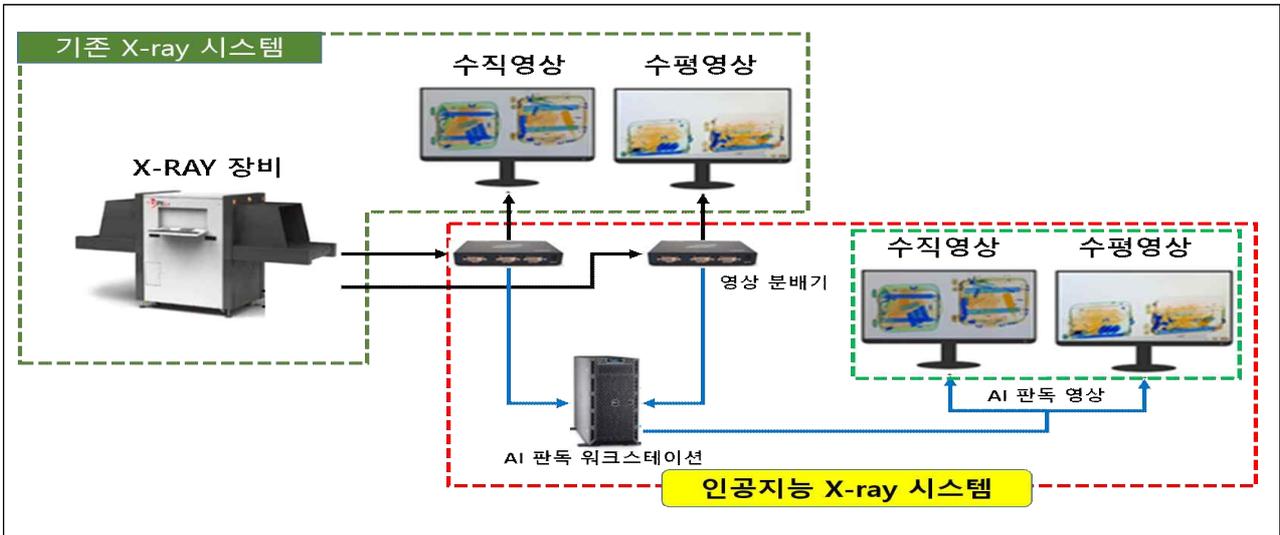
3. 인공지능(AI) X-ray 판독지원시스템 활용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항공보안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항공보안계획」 8.1.1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과 액체·겔(gel)류 등의 기내 반입금지 물품 등에 대한 탐지를 위하여 모든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이 보안검색 완료구역으로 진입되기 전에 문형금속탐지기(또는 원형검색장비)·엑스선 검색장비·폭발물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국가항공보안계획」 9.3.3.1 및 「자체보안계획」(공사) 11.1.3에 따르면 보안장비운영자¹¹⁾는 보안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경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보안장비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한편, 공사에서는 보안검색의 인적 오류 예방 및 보안검색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등을 통해 [그림]과 같이 인공지능(AI) X-ray 판독지원 시스템¹²⁾(이하 “AI X-ray 판독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한 후 202♣년 ♣월 이후 부터 ♣♣공항 등 ♣개 공항¹³⁾의 일부 검색대에서 활용¹⁴⁾하고 있다.¹⁵⁾

[그림] “인공지능(AI) X-ray 판독시스템 구성도”

-
- 11) 「항공보안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화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12) AI X-ray 판독지원시스템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X-ray에 표출되는 수하물 이미지를 분석하고 수하물 내 위해물품을 자동으로 탐지 및 알람을 제공하는 최첨단 스마트 보안시스템을 말하며, 1대당 도입가격은 ♣♣♣♣원(부가가치세 포함)
 - 13) ♣♣공항(2대)은 202♣.♣월 도입, ♣♣공항(1대), ♣♣공항(1대), ♣♣공항(1대), ♣♣공항(1대)는 20♣♣.♣♣월 도입
 - 14) 20♣♣. ♣♣월말 기준으로 인공지능(AI) X-ray 판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검색대(♣♣대)에서는 보안실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공항공사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
 - 15) 위 AI X-ray 판독지원 시스템은 20♣♣. ♣♣. ♣♣. 해당 시스템에 대한 성능 확인을 의뢰받은 ♣♣기술♣♣으로부터 품목별로 평균 판독률이 ♣♣%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았다.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리고 공사에서는 「항공보안법」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2022년부터 자회사인 22(주)에 위탁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2022년 3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자회사에 위탁계약된 인원보다 분기별로 최소 18명에서 최대 84명까지 검색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검색업무가 수행¹⁶⁾되고 있으며,
- 공사에서는 2022년 이후 증가하고¹⁷⁾ 있는 보안실패와 관련하여 이러한 보안 실패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정감사 시 지적¹⁸⁾에 대하여 AI X-ray 판독시스템을 통한 기능개선 등으로 판독업무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 또한, 공사에서는 2022. 3. 3. 제2회 세계 보안엑스포에 전시된 AI X-ray

16) “자회사 항공보안검색 현원 현황(2022.1.1~2022.3.31)”

연도	계약인원	자회사 항공보안검색요원 현원(명)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현원	과부족	현원	과부족	현원	과부족	현원	과부족	
2022년	22	22	Δ68	22	Δ81	22	Δ56	22	Δ39	
2022년	22	22	Δ27	22	Δ39	22	Δ18	22	Δ45	
2022년	22	22	Δ41	22	Δ44	22	Δ84	22	Δ49	
2022년	22	22	Δ39	-	-	-	-	-	-	

※ 22 계약인원 재구성(최종계약 및 분기말 현원 기준)

17) 22년 3건 → 22년 3건 → 22년 3건 → 22년 3건

18) 2020년~2022년 국정감사 시 보안실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등 지적

판독시스템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해당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탐지물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독해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육안판독 지원을 통한 인적 오류 최소화로 보안검색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공사에서는 보안실패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지적과 함께 공항별로 보안검색요원 결원 발생 등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업무 담당자의 피로도는 가중되고 있으나 단기간 내 결원 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보안검색요원의 육안 판독오류나 집중력 부족 등으로 인한 보안검색 실패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AI X-ray 판독지원시스템 도입 확대 등 인적 오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인적오류 최소화를 위해 공사에서 도입하기로 한 AI X-ray 판독지원시스템은 [표3]과 같이 ♣개 공항의 전체 검색대 총 ♣♣♣대(대인 ♣♣대, 위탁 ♣♣개) 중 ♣♣공항 등 ♣개 공항의 대인 검색대 ♣대에만 도입·활용하고 있는 등 202♣. ♣. ♣. 감사일 현재 도입률은 ♣.1%(대인 검색대 기준시 ♣.3%)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입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표3] “공항별 AI X-ray 판독시스템 도입 현황(운용수량 기준)”

구분		합계	♣♣	♣♣	♣♣	♣♣	♣♣	♣♣	♣♣	♣♣	♣♣	♣♣	♣♣	♣♣	♣♣
도입률 (B/A, %)	소계	♣♣	♣♣	♣♣	♣♣	♣♣	-	♣♣	-	-	-	-	-	-	-
	대인	♣♣	♣♣	♣♣	♣♣	♣♣	-	♣♣	-	-	-	-	-	-	-
	위탁	-	-	-	-	-	-	-	-	-	-	-	-	-	-
검색대 설치 대수(A)	소계	♣♣	♣♣	♣♣	♣♣	♣♣	♣♣	♣♣	♣♣	♣♣	♣♣	♣♣	♣♣	♣♣	♣♣
	대인	♣♣	♣♣	♣♣	♣♣	♣♣	♣♣	♣♣	♣♣	♣♣	♣♣	♣♣	♣♣	♣♣	♣♣
	위탁	♣♣	♣♣	♣♣	♣♣	♣♣	♣♣	♣♣	♣♣	♣♣	♣♣	♣♣	♣♣	♣♣	♣♣
AI판독 도입 대수(B)	소계	♣♣	♣♣	♣♣	♣♣	♣♣	-	♣♣	-	-	-	-	-	-	-
	대인	♣♣	♣♣	♣♣	♣♣	♣♣	-	♣♣	-	-	-	-	-	-	-
	위탁	-	-	-	-	-	-	-	-	-	-	-	-	-	-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다. 관계기관 의견

- 공사에서는 보안검색 현장의 인적 오류 감소를 위해 AI X-ray 확대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¹⁹⁾, '23.11월 현재 3개 공항에 추가 배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기술 성숙도에 따라 추가 예산 배정 등을 통해 각 공항 추가 배치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항공보안장비 점검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검색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운영자²⁰⁾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점검은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및 연간점검으로 구분하고, 각 점검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성능 검사 기준」 별표2의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실시하고, 연간점검 시는 성능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개별 장비별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한 경우 운영자는 매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9) 2023. 5. 11. 「항공보안혁신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항공보안실패의 주 원인인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AI 기능을 통해 관독하는 AI X-ray를 전국 공항에 확대 설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20)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에 따르면 “검색장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검색장비에 대한 최종 관리책임이 있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여객·화물터미널 운영자, 도심 공항터미널 운영자 및 상용화주를 말함

- 또한, 「항공보안 표준절차서」(공사) 9.4.2에 따르면 공항보안감독자 및 항공보안장비 위탁업무 감독자는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업무 관리감독, 항공보안장비 점검결과 매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항공보안장비 표준·예비운용절차서」(공사) II 표준운용절차서, 2.2 장비별 정기 점검에 따르면 운영자는 정기점검항목에 의거하여 공항별 예방점검(PMI)을 실시하여야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장비운용자료를 입력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검색장비 중 엑스선 검색장비에 대한 점검주기별 점검항목은 [표4]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4] “엑스선 검색장비의 점검주기별 점검항목”

점 검 주 기	점 검 항 목
일일점검	이미지저장 및 재생상태 점검
주간점검	장비기능(확대,유·무기질,색농도,밀도)점검 모니터 동작상태 점검, 시간표출상태 점검
월간점검	방사선 누출량 점검, 컨베이어벨트 및 납커튼 점검 비상차단장치 및 센서동작상태 점검 해상도 및 투과력 점검 점검용시험물품 파손 및 감지상태 점검 차량형 X-RAY 발전기, 유압잭 동작상태 점검
분기점검	제너레이터 점검, 디텍터 점검 전압장치(AVR,UPS,AC전원,DC전원)점검, 부대시설 점검
반기점검	BOARD 등 장비 해체 후 내·외부 전반에 대한 클린케어 ²¹⁾
연간점검	종합성능점검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국가항공보안계획」²²⁾ 9.1.2에 따르면 보안장비의 구매, 설치 및 유지 보수는 보안장비 운영자²³⁾가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고, 9.3.2에 따르면 보안장비 운영자는 모든 장비가 최상의 상태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예방 유지보수

21) 엑스선 검색장비 내·외부 청결을 유지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PANEL의 덮개를 열어 장비 내부 각 BOARD 등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진공청소기, 붓, 에어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부대시설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장비 ♣대당 통상 ♣분(♣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2)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공보안과)이 수립·시행(2022. 1. 28. 일부개정)

23) 「국가항공보안계획」 9.1.1에 따라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및 상용화주 등 보안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임

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안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자격 있는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자회사 위탁관리 감독지침」(공사) 제7조에 따르면 감독자²⁴⁾는 해당 위탁관리 업무가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6조에 따라 자회사가 제출하는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중요서류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부서²⁵⁾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3조에 따라 자회사가 제출한 과업 내용서에서 지정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공사에서는 검색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위탁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매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주기별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이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결과 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 유지보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검색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 및 ♣♣권역의 보안검색 장비에 대한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 ♣♣♣♣(주)에서는 2023. 2. 8. ♣♣공항 국제선 등에 설치된 보안 검색 장비 ♣♣♣대에 대해 반기점검을 하지 않고도 점검한 것처럼 점검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당시 공사에서는 장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만 확인²⁶⁾하여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점검 주기 준수 여부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등²⁷⁾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4) 「자회사 위탁관리 감독지침」 제3조에 감독자는 자회사 위탁관리 계약 이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고 되어있음

25) 「자회사 위탁관리 감독지침」 제3조에 감독부서는 자회사 위탁관리 계약의 이행관리 및 총괄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라고 되어있음

26) 반기점검 소요 시간은 장비 ♣대당 평균 ♣분(♣시간) 정도 소요되나, 202♣. ♣. ♣. ♣♣공항에서 반기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작성한 점검일지에 따르면 16:30부터 17:30까지 1시간 동안 엑스선 검색장비 ♣♣대를 점검(반기점검) 하였다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감안하면 장비 1대당 평균 9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음

- 이를 비롯하여 감사 기간 중 공사를 통해 공항별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붙임]과 같이 공사 ♣개 공항(♣♣, ♣♣, ♣♣, ♣♣)에서 검색장비 유지관리 위탁업체인 자회사에서 실시한 202♣년도 상반기 엑스선 검색장비에 대한 반기 점검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관계기관 의견

- 이에 대하여 ♣♣공항(공사)에서는 자회사에서 제시하는 서면자료를 토대로 매월 위탁업무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예방점검일지가 실제 점검여부와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점검의 실제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 ♣♣공항(공사)에서도 자회사가 제출한 예방점검일지의 실제 점검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업무수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 ① 항공보안검색 실패 등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보안검색 등에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 개설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평가 체계 마련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고, 보안검색 실패 최소화를 위해 예산 및 기술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공지능(AI) X-ray 판독지원시스템 확대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7) ♣♣공항에서는 자회사에서 제시하는 서면자료를 토대로 매월 위탁업무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예방점검일지가 실제 점검여부와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점검의 실제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

② 앞으로 자회사에서 검색장비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점검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자회사 위탁관리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검색장비 정기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회사 위탁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 검색장비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자회사 담당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관련자>

- 한국공항공사 ★★★★★ 目目目
- 한국공항공사 ★★★★★ ♠♠♠
- 한국공항공사 ★★★★★ ♣♣♣
- 한국공항공사 ★★★★★ ♣♣♣
- 한국공항공사 ★★★★★ ◁◁◁
- 한국공항공사 ★★★★★ ◀◀◀
- 한국공항공사 ★★★★★ ▶▶▶
- 한국공항공사 ★★★★★ ▣▣▣

[붙임] “엑스선 검색장비 정기점검(반기점검) 미 실시 현황(2023년)”

공항명	총 운영 대수	반기점검일지					CCTV 확인결과 실제점검여부 (O, X)	
		점검일시	점검위치	점검 대수	1대당 평균 점검소요 시간(분)	점검자		확인자
♣♣	♣♣	♣♣♣♣ 11:10~14:10	국내선 출발 검색장 1~2	2	90			X
		♣♣♣♣ 11:10~14:10	국내선 출발 검색장 3~4	2	90			X
		♣♣♣♣ 15:20~17:30	국내선 출발 검색장 5~6	2	65			X
		♣♣♣♣ 13:00~15:00	국내선 출발 검색장 7~8	2	60			X
		♣♣♣♣ 15:40~17:40	국내선 출발 검색장 13~14	2	60			X
		♣♣♣♣ 10:00~11:30	국내선 출발 검색장이동용	1	90			X
		♣♣♣♣ 15:30~16:30	국내선 의전실	1	60			X
		♣♣♣♣ 15:30~17:30	국내선 3F직원통로, 2F계류장	2	6			X
		♣♣♣♣, 15:30~17:30	교육센터 1~2	2	6			X
		♣♣♣♣ 15:30~17:30	교육센터 3~4	2	6			X
		♣♣♣♣ 15:00~17:00	국제선 출국 검색장 7	1	120			X
		♣♣♣♣ 15:40~17:30	국제선 출국 38GATE, 의전실	2	55			X
		♣♣♣♣ 15:30~17:30	국제선 위탁 1~2	2	60			X
		♣♣♣♣, 15:30~17:30	국제선 위탁 5~5-1	2	60			X
		♣♣♣♣ 15:30~17:30	국제선 위탁 환승, 3F직통	2	60			X
		♣♣♣♣ 15:30~17:30	국제선 2F계류장, 1F세관통로	2	60			X
		♣♣♣♣ 15:30~17:30	SGBAC	1	120			X
		♣♣♣♣ 15:30~17:30	항공지원센터	1	120			X
♣♣	♣♣	♣♣♣♣ 16:30~17:30	국제선 전체	20	3			X
		♣♣♣♣ 10:30~11:30	국내선 전체	11	5.5			X
		♣♣♣♣ 15:10~16:10	검문소	4	15			X
♣♣	♣♣	♣♣♣♣ 22:18~23:30	국내선 출발 검색장B 4~6	3	20			X
		♣♣♣♣ 23:12~23:48	국내선 출발 검색장B 10~11	2	20			X
		♣♣♣♣ 21:30~22:09	국제선 환승 1, 2층	2	25			X
♣♣	♣♣	♣♣♣♣ 10:00~12:00	국제선 위탁, 상주 통로	2	60			X
		♣♣♣♣ 10:00~12:00	국내선 출발 검색장	2	60			X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4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한국공항공사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23. 7.	시정, 주의, 개선, 통보	경고 4	-	-	-

□ 제 목 : 항공보안실패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

-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의 관리·운영과 공항 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항운영자”로서 **♣♣**공항 등 **♣♣**개 공항에서 불법방행행위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보안계획」(공사) 등에 따라 [표1] 과 같이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등 유관기관에 해당 사실을 문자(SMS) 등으로 보고하는 등 항공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1] “최근 **♣**년간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문자보고 현황(20**♣.♣.♣.**~20**♣.♣.♣.**)”

(단위 : 건수)

구분	합계	♣♣	♣♣	♣♣	♣♣	♣♣	♣♣	♣♣	♣♣	♣♣	♣♣	♣♣	♣♣	♣♣	♣♣
소계	286	64	21	84	28	1	2	1	30	0	27	5	8	14	1
20 ♣♣	24	9	2	7	-	-	-	-	-	-	5	-	-	1	-
20 ♣♣	67	10	2	27	-	-	2	-	13	-	5	-	4	4	-
20 ♣♣	156	35	15	41	22	-	-	-	16	-	12	4	3	7	1
20 ♣♣	39	10	2	9	6	1	-	1	1	-	5	1	1	2	-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공사는 보안검색교육기관¹⁾으로서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보안계획」(공사) 및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2]와 같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2] “최근 ♣년간 항공보안검색요원 교육훈련 현황(20♣♣.♣.♣.♣.~20♣♣.♣.♣.♣.)”

(단위 : 건, 명)

구분	합계		초기교육		정기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계	263	5,268	19	367	244	4,901
20♣♣	64	1,605	8	152	56	1,453
20♣♣	64	1,112	1	12	63	1,100
20♣♣	59	1,002	2	21	57	981
20♣♣	58	1,043	3	46	55	997
20♣♣	18	506	5	136	13	370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항공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지연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항공보안법」 제19조 제1항²⁾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항 운영자는 ① 법 제2조 제8호의 불법방해행위³⁾가 발생한 경우, ② 「항공보안법

1) 한국공항공사는 200♣. ♣. ♣.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됨

2) 공항운영자는 ①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 ③ 그 밖에 항공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3)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①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②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③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④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⑤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⑥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보안검색방법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하여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④ 무기·폭발물 등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국가항공보안계획」 11.8.24)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검색대 불법 위반 사건 및 그밖에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승객 등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유선 또는 문자(SMS)로 보고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자체보안계획」(공사) 77.2.55)에 따르면 공사는 항공보안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안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 보안검색대에서 발생하는 불법 위반사건, 그 밖에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승객 등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유선 또는 문자(SMS)로

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⑦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⑧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 4) 「국가항공보안계획」 11.8.2에는 공항운영자는 ① 공항보호구역 불법 진입 사건, ② 검색대 불법 위반 사건, ③ 공항보호구역내 폭발물, 무기 등 위해물품 발견 사건, ④ 공항 폭발물 위협, ⑤ 공항인질극, 군중시위 등 불법방해행위, ⑥ 공항보호구역 불법 진입 시도 행위, ⑦ 공항 안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위해 행위, ⑧ 무효 출입증, 타인 출입증 등 불법 사용 행위, ⑨ 공항 출입통제시스템 고장, ⑩ 공항 보안울타리, 침입방지시스템(장력시스템 등) 파손 행위, ⑪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보안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행위, ⑫ 그밖에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승객 등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유선 또는 문자(SMS)로 보고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5) 「자체보안계획(공항공사)」 7.2.5에는 ① 「항공보안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불법방해행위, ② 인가되지 않은 사람 및 물품이 공항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 등 불법진입 사건(불법진입 시도 포함), ③ 항공보안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안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 보안검색대에서 발생하는 불법 위반사건, ④ 공항 및 항공기 대상 폭파협박, ⑤ 공항 내 인질극, 군중 시위 등 소란행위, ⑥ 공항내 보안검색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위해행위, ⑦ 무효 출입증 및 타인 출입증 등의 불법 사용행위, ⑧ 공항 출입통제시스템 고장, ⑨ 공항 보안울타리, 침입방지시스템(장력시스템 등) 파손행위, ⑩ 「항공보안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⑪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보안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행위, ⑫ 그 밖에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승객 등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유선 또는 문자(SMS)로 보고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보고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국토교통부에서는 201♣. ♣. ♣. 한국공항공사 등에 문자(SMS) 등 보고체계 정비, 담당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항공보안분야 불법행위 등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도록 통보⁶⁾하였다.
- 따라서 공항운영자인 공사에서는 「항공보안법」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따라 불법방해행위 등 보안사고⁷⁾가 발생한 경우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한편, 공사에서 관리하는 총 ♣개 공항 중 ♣개 공항에서 [표3]과 같이 201♣년부터 202♣년 ♣월까지 총 ♣건의 보안검색 실패 등 보안실패가 발생하였고, 202♣년 이후 발생 건수는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표3] "최근 ♣년간 공항별 보안실패 현황(20♣.♣.♣.~20♣.♣.♣.)"

(단위 : 건, 명)

구분	합계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공사에서는 202♣. ♣. ♣. 18:02경 ♣♣공항에서 위탁수하물 검색과정 중 가스총 등을 적발하지 못하였고 당시 보안검색요원이 이를 사후에 인지하였으므로 지방항공청 등에 즉시 유선 또는 문자(SMS)로 보고될 수 있도

6)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22♣(201♣. ♣. ♣.)호로 한국공항공사 등에 문서로 통보

7) 「자체보안계획」(공항공사) 2.25 에 따르면 “항공보안사고”란 불법방해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인명 및 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공항 운영체계 혼란 및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등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록 하여야 하는데도, 보안검색감독자 일시 부재 등으로 상황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약 48시간이 지난 202♣. ♣. ♣. 18:00경에서야 ♣♣ 지방항공청 등에 문자(SMS)로 보고되는 등 [표4]와 같이 202♣. ♣. ♣.부터 202♣. ♣. ♣.까지 관리·운영 중인 ♣개 공항에서 발생한 총 ♣♣♣건의 보안사고 중 ♣♣건이 보안사고가 발생(인지) 시간으로부터 최소 15분 이상 경과 후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 중 30분 이상 지연 보고한 건수는 총 30건으로 202♣년 이후 그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2♣년 8.96% → '2♣.♣월 15.38%) 있어, 향후 보안사고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4] “최근 ♣년간 보안사고 보고시간 경과 현황(20♣.♣.♣.~20♣.♣.♣.)”

(단위 : 건, %)

구 분	보안사고 발생 후 SMS 보고 시까지 경과 시간에 따른 보고 건수						
	소 계 (D=A+B+C)	15분 미만		15분 이상 ~ 30분 미만		30분 이상	
		건수(A)	비율(A/D)	건수(B)	비율(B/D)	건수(C)	비율(C/D)
합계	262	187	71.37%	45	17.18%	30	11.45%
20♣	67	50	74.63%	11	16.42%	6	8.96%
20♣	156	110	70.51%	28	17.95%	18	11.54%
20♣	39	27	69.23%	6	15.38%	6	15.38%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안검색 실패자 및 불시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재교육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항공보안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보안검색 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자체보안계획」(공사) 13.5.3 및 13.6.4에 따르면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업무상 과실로 보안검색 또는 출입통제에 실패한 경우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 및 평가를 받은 후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항공보안 표준절차서」(공사) 4.17.5에 따르면 보안검색감독자는 보안검색요원이 업무 수행 중에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 즉시 해당 업무를 중단시키고, 보안검색 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 및 평가를 받은 후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회사 현장대리인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⁹⁾이나 공항운영자등이 실시하는 불시평가¹⁰⁾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후에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21조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이 항공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이 실시하는 불시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요원에 대하여는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후 항공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에서는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업무상 과실로 보안검색 또는 출입통제에 실패하거나 공항운영자등이 실시하는 불시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색요원 등이 보안검색

8) 「자체보안계획」(공사) 13.1.3에는 공사는 항공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계획 13.5.1 및 13.6.1에 따르면 공사는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이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여부 및 인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안검색 업무 및 경비업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9)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조 제13호에 따르면 “관계기관”이란 항공보안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 또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10)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불시평가(Test)”란 보안업무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 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하는 것을 말함

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공사에서는 202♣. ♣. ♣. 5시 47분 ♣♣공항 국내선 대인검색장 9호 기에서 항공기 객실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자충격기(1점)가 서류가방에 포함되어 엑스선 검색장비를 통과하는 것을 당시 보안검색요원이 X-ray 판독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여 위해물품이 보호구역과 항공기 객실내에 반입되게 하였으므로 보안검색에 실패한 보안검색요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게 한 이후 현장에 복귀하여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요원이 보안검색 업무 전반에서 배제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사유로 업무 공백에 대한 조치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202♣. ♣. ♣. 재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약 11일간 보안실패 당시 담당판독업무만 배제하고 나머지 개봉·신체검색·안내 등의 보안검색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사에서는 202♣. ♣. ♣. ♣♣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에 대한 불시평가¹¹⁾ 결과 보안검색요원 ☒☒☒이 모의폭발물 발견 실패로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판독 교육이 필요하다는 보안점검 결과를 통보받았으므로 해당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후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202♣. ♣. ♣.에 보안점검 관련 조치 결과를 제출하면서 ♣♣공항 항공보안 경진대회 시행계획(202♣.♣.♣.~♣.♣.)만 첨부¹²⁾하고 해당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별도의 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1)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불시평가란 보안업무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불시에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12)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항공보안 경진대회(202♣. ♣. ♣.~ ♣.♣. ♣일간 실시) 개최를 통해 판독 및 순찰능력 배양, 위해물품 적발 요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시행으로 동기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결과(계획)를 제출

- 이를 비롯하여 [표5]와 같이 ♣♣공항 및 ♣♣공항에서 보안검색에 실패한 보안검색요원이 관련지침에 따라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표6]과 같이 지방항공청 또는 공사가 202♣년에 ♣차례 실시한 불시평가에서 불합격한 보안요원¹³⁾이 관련지침에 따라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보안검색 및 항공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5]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재교육 및 업무배제 현황”

공항명	보안사고 발생일시	보안사고 내용	보안검색 실패요원	재교육일	업무배제 여부
♣♣공항	♣♣. ♣. ♣. ♣:♣	안보위해물품(전자총격기) 미적발	◆◆◆	202♣. ♣. ♣.	재교육일까지 판독업무만 배제
♣♣공항	♣♣. ♣. ♣. ♣:♣	검색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승객 ♣♣명 통과	◇◇◇	미이수	보안검색업무 계속 수행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표6] “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불시평가 불합격 현황”

불시평가 일시	평가 주체	공항명	불합격자	담당업무	평가결과
202♣. ♣. ♣.	♣♣지방항공청	♣♣공항	☒☒☒	항공보안검색	위해물품 적발 실패
202♣. ♣. ♣.	한국공항공사	♣♣공항	☒☒☒ ¹⁴⁾	항공보안검색	위해물품 적발 실패
202♣. ♣. ♣.	♣♣지방항공청	♣♣공항	♪♪♪	항공보안검색	위해물품 적발 실패
202♣. ♣. ♣.	한국공항공사	♣♣공항	♫♫♫	항공보안검색	위해물품 적발 실패
			ΣΣΣ	항공경비	신분검색 실패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공사는 보안검색 업무 중 X-ray 판독업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안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X-ray 판독업무만 배제되어야 하며, 신체·개봉·안내 등 다른

13) 항공보안검색요원 ♣명 및 항공경비요원 ♣명

14) '2♣. ♣. ♣. 14:23경 국내선 보안검색대 5호기에서 불시평가를 실시하여 폭발물을 X-ray검색대를 통과하였으나 해당 보안검색요원은 모의 폭발물을 적발하지 못하여 재교육을 받아야 하나, 보안검색감독자와 자회사 관리자와 함께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기 등이 겹쳐있어 판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없는데도 불시평가 실패에서 제외함

보안검색 업무까지 배제하는 것은 보안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퇴직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고, 소규모 공항(검색요원 3명 근무)의 경우에는 검색장 운영에 지장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그러나 「항공보안법」에서 “보안검색”이란 무기 또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위한 X-ray 판독·개봉·신체검색·안내 등이 모두 보안검색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체보안계획」(공사) 13.5.3에 따르면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 재교육 및 평가를 받은 후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체보안계획」 승인 부서(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에서도 보안검색에 실패한 검색요원은 “모든 보안검색 업무에서 제외하고 재교육 및 평가 후 보안검색 업무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유권해석(2023. 3. 3.)을 하고 있으므로 상기 판독업무 담당 검색요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X-ray 판독·개봉·신체검색·안내 등 모든 보안검색업무에서 우선 배제하고 신속히 재교육 및 평가를 이수한 이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배제에 따른 트라우마나 퇴직 유발 등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 소규모 공항의 검색장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은 보안검색의 주된 목적 및 업무배제의 취지를 오해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다만, 보안검색에 실패한 검색요원이 신속하게 재교육을 받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8시간)¹⁵⁾ 과정에 재교육(8시간) 대상자를 포함시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등 비대면 교육이나 보안검색 실패 현장을 찾아가는 방문교육 활성화 또는 일정 기간 내 교육수료를 조건으로 업무에 우선 복귀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5) 보안검색에 실패하여 재교육을 받은 경우 1년 단위로 정기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면제하고 있으며, 정기교육이 2023년에 54회가 계획되어 평균 매주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4. 보안 실패에 따른 과태료 처분 관련 대응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항공보안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항운영자¹⁶⁾등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¹⁷⁾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국가항공보안계획」 6.1.7에 따르면 공항운영자 등은 자체보안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보안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체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또한 「항공보안법」 제51조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국가항공보안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 아울러, 「자체보안계획」(공사) 1.2.14에 따르면 공사는 조직 및 일반인 대상 보안문화¹⁸⁾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문화 교육이나 보안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계획 1.2.15에 따르면 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0조 제2항에

16) 「항공보안법」 제2조 제2호에는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 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17)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보안계획에는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18) 「자체보안계획」(공항공사) 2.57에 따르면 “보안문화(Security Culture)”란 한 조직 및 개인이 ‘보안’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유하는 일련의 보안관련 규범, 가치 및 태도 등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따라 승인받은 자체보안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보안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체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한편, 공사에서는 [표기]과 같이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과된 과태료 28건 중 21건(75%)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¹⁹⁾하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표기] “보안검색 실패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 현황(2019~2022)”

(단위 : 건, %)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과태료 부과 건수(A)	28	5	5	10	8
소송 제기 건수(B)	21	2	3	9	7
소송 제기율(B/A, %)	75.0%	40.0%	60.0%	90.0%	87.5%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보안검색 실패 발생일 기준)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공사에서는 「항공보안법」에 따른 공항운영자로서 항공보안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승객 일치 여부 확인 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체보안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
 - 2020년 이후 보안검색 실패 증가(♣년 ♣건 → ♣년 ♣건 → ♣년 ♣건)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감소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자체보안계획 미이행(보안검색 실패 등)을 사유로 지방항공청이 공사에 부과한

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안업무수행 담당자 과실 여부, 관련 유권 해석 및 유사 판례,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통한 법적 대응²⁰⁾을 하고 있다.

- 특히, 202♣. ♣. ♣. 11:53경 ♣♣공항 국내선 대인검색장 X-ray(3호기)에서 승객이 M1 소총 실탄 1발을 가방 내 휴대하고 보호구역 내 반입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여 ♣♣지방항공청이 자체보안계획(위해물품 반입금지) 미이행 등을 사유로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당시 보안 검색요원²¹⁾이 감기약 복용 후 졸음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²²⁾이었음에도 이러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²³⁾ 보안검색요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어 공사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²⁴⁾을 하였고,
- 201♣. ♣. ♣.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에서 공사담당자 등을 포함한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항공보안에 있어 탄창은 총기를 구성하는 부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 ♣. ♣. 17:48경 ♣♣공항 국내선 대인검색장 X-Ray에서 승객이 소지한 휴대 물품 내 총기의 빈 탄창 1점에 대한 보안검색²⁵⁾에 실패로 ♣♣지방항공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통지한 건에 대해 공사에서는 빈 탄창에 대한 별도의 상세기준이 없으므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또는 안보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의제기²⁶⁾하였다.

20) 「항공보안법」 제51조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귀책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은 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지표 중 공항보안관리 지표의 감점요인으로 작용(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참고)

21) ♣♣♣♣ 소속 √√√, 사건 당시 관독업무 담당

22) 당시 보안검색요원 경위서에 따르면 보안검색 실패 당일인 202♣. ♣. ♣. 감기 몸살 기운으로 출근 전에 집에서 종합감기약을 복용하였고, 휴게시간에도 감기약을 복용하고 근무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약 기운이 올라오면서 졸음이 몰려와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근무를 이어가던 중 같은 날 11:52분경 실탄이 들어있는 가방이 들어왔지만 실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

23) 「항공보안 표준절차서」(공항공사) 4.7(보안검색요원) 4.7.1에 따르면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무자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안검색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 등은 교대자 지정 또는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절차서 4.7.2에 따르면 근무투입 전 점검은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자가 각 근무지별로 진행하여, 보안검색요원 인원현황, 건강상태, 음주여부, 근무수칙 숙지상태 및 항공보안장비 등 조작성요령과 업무수행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전파하도록 되어 있음

24) 202♣. ♣. ♣. ♣♣지방항공청에 제출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참고

25) ♣♣♣♣ 소속 √√√√, 당시 관독업무 담당

26) 202♣. ♣. ♣. ♣♣지방항공청에 제출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참고

- 또한, 공사에서는 202♣. ♣. ♣. ♣♣지방항공청 및 같은 해 ♣. ♣.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신분증 부정 사용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로 과태료 처분받은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이후 1심 판결에서 각각 패소하였음에도 202♣. ♣. ♣.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상기 소송 건과 유사하게 신분증 부정 사용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종전 판결 내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이의신청²⁷⁾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 그리고 공사에서는 201♣. ♣. ♣. ♣♣공항에서 발생한 보호구역 무단 침입과 관련하여 ♣♣지방항공청의 과태료(5,000,000원)를 부과한 처분은 외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의신청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총 13,200,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201♣년부터 202♣년까지 발생한 보안검색 실패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소송 진행으로 인해 총 97,900,000원²⁸⁾을 지출하였다.
- 한편,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공사의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항공 보안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방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소송을 남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보다는 소송비용으로 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2♣. ♣. ♣. 감사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 ① 앞으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령 등에 따라 즉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7) 2021. 8. 19. ♣♣지방항공청에 제출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참고

28) ‘♣년~♣년까지 총 21건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송수행을 위해 공사에서 소송대리인(법무법인)에 지급한 착수금 및 승소보수금

- ② 보안사고 발생 후 지방항공청 등에 즉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지연 경위 등을 확인하여 관련자 등에게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체계를 정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보안검색에 실패하거나 불시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보안검색요원 중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검색요원에 대하여는 8시간 이상 재교육을 이수하고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보안검색에 실패한 검색요원의 업무배제 범위를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구체화 하고, 재교육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확보나 상시 교육과정 개설, 비대면·현장 방문교육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⑤ 보안검색에 실패하거나 불시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검색요원에게 8시간 이상 재교육 없이 계속하여 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 한국공항공사 ♣♣공항 ★★★★★ €€€
- 한국공항공사 ♣♣공항 ★★★★★ °F°F°F(현 ★★★★★)
- 한국공항공사 ♣♣공항 ★★★★★ ●●●
- 한국공항공사 ♣♣공항 ★★★★★ □□□

- ⑥ 보안검색 실패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과도한 소송 제기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및 재정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소송 기준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5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한국공항공사, 항공정책관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23. 7.	경고, 개선, 통보,	인사자료활용	-	-	-

□ 제 목 : 임원 복무관리 등 부적정 및 안전관리비 미반영

□ 내 용

1. 업무 개요

-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정관」,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사장을 포함한 6인 이하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에 공사는 사장, 상임감사, 부사장, 2명의 본부장¹⁾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을 상임이사로 임명하고 있고, 사장 및 부사장, 상임감사에게는 [표1]과 같이 출퇴근을 위한 전용차량을 제공·운영하고 있다.

[표1] "공사 임원 명단 및 전용차량 출퇴근 현황"

구분	직위	성명	임기	전용차량	출퇴근	운전기사
1	★★★★★	∂∂∂	'2♣.♣.~'2♣.♣.	G80(**호****)	○	공사직원
2	★★★★★	∞∞∞∞	'2♣.♣.~'2♣.♣.	G80(**하****)	○	자회사 직원
3	★★★★★	ÅÅÅ	'2♣.♣.~'2♣.♣.	G80(**호****)	○	자회사 직원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1) ★★★★★ \$\$\$('22.12.26~현재), ★★★★★ €€€('21.4.16~현재)

- 또한, 공사에서는 「정관」(공사) 제2조의2, 「출자회사관리규정」(공사) 제5조에 따라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따른 자회사인 ♣♣♣(주)를 설립하였으며, 201♣. ♣. ♣. ♣♣♣(주)와 “공항시설 서비스 위탁관리 용역”을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년(20♣♣.♣.♣.~20♣♣.♣.♣.)으로 수의계약²⁾하고, 201♣년부터 202♣년까지 ♣년 단위로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 아울러, 공사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공항 등 ♣개 공항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항 국내선 주차빌딩 신축공사’ 및 ‘♣♣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등 202♣년부터 202♣. ♣. ♣. 감사일 현재까지 총 ♣♣건의 공항시설 유지 보수 공사를 [표2]와 같이 시행하였다.

[표2] “최근 ♣년간 공항시설 유지보수공사 현황”

구분	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계	129	46	41	37	5
♣♣공사(건)	84	34	25	22	3
♣♣공사(건)	45	12	16	15	2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근무시간 미준수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임원 복무관리 예규」(공사)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원은 법령, 정관, 그 밖의 사규를 준수하고 성실 근면하게 근무하여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예규 제5조에 의하면 임원은 사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 등 개정(기획재정부, '18.7.5),

- 같은 예규 제10조에 따르면 임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09시부터 18시), 주 40시간(주5일 근무)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예규 제14조에 따르면 임원이 출장, 휴가, 외출, 유연근무³⁾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산 시스템에 의한 근무상황부 등을 활용하여 사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시차출퇴근형 근무는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조정하여 수시로 신청하되 1개월 이상 실시해야 하고, 근무시간선택형 근무는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요일별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한다고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공사의 임원은 「임원 복무관리 예규」(공사)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출, 조퇴, 유연근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공사 ★★★★★(ddd)은 외출, 조퇴, 유연근무 등 근태신청을 하지 않은 채 ♣♣♣♣♣ 같이 66회는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에 퇴근하였고, 36회는 휴게시간(12시~13시, 1시간)을 지나서 복귀하는 등 임원으로서 복무관리를 준수하지 않았다.
- 이를 비롯하여 ♣♣♣♣♣ 같이 공사 ★★★★★(∞∞∞∞)는 5회는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에 퇴근하였고, 7회는 휴게시간(12시~13시, 1시간)을 지나서 복귀하였으며, 공사 ★★★★★(AAA)은 15회에 걸쳐 휴게시간(12시~13시, 1시간)을 지나서 복귀하는 등 [표3]과 같이 임원 복무관리를 준수하지 않았다.

3) 유연근무에는 시차출퇴근형과 근무시간선택형 등이 있음

[표3] “공사 임원의 복무관리 미준수 현황”

(단위 : 건)

임원	근무기간	퇴근시간 위반		점심시간 위반		합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총건수	총시간
★★★★★ (000)	♣.♣.♣.~♣.♣.♣.	66	39시간39분	36	32시간39분	102	72시간18분
★★★★★ (0000)	♣.♣.♣.~♣.♣.♣.	5	2시간49분	7	2시간2분	12	4시간51분
★★★★★ (AAA)	♣.♣.♣.~♣.♣.♣.	-	-	15	6시간30분	15	6시간30분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의견

-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임원이 근무시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경영진으로서 필요한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영의 자율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정부, 국회, 항공사, 지자체 등 업무관련자를 만나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거나 코로나와 직원들의 저녁 회식 기피로 점심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대화가 길어져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그러나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임직원이 지켜야 할 본분으로 근무시간 준수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시 사전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 수행이 충분히 가능한 점, 긴급한 업무처리라도 근태신청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급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운 점, 점심시간을 직원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근태신청을 통해 복무관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임원차량 운용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자회사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모·자회사 경영협약서⁴⁾」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모·자회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을 준수하여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되어 있고,
 - 「자회사 위탁관리 계약 및 운영예규」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위탁관리”라 함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자회사와 계약 및 협약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한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예규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공항운영분야”란 미화, 카트관리, 의전, 영접(수위 포함), 안내, 유실물, 주차(통합주차지원센터, 교통질서 포함) 및 기타 운영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시설관리분야”란 토목, 조경, 장비, 정비, 순환버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류충돌예방활동 및 탑승교 운전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주)와 체결한 “202♣년 ♣부권역 공항시설 위탁관리 과업내용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내용적 범위는 특수과업내용서에 따르며 이 경우 공사에서 직접 유지관리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위탁관리 과업내용서 및 특수과업내용서 제2조 제2항 15. 장비정비 직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항내 토목·조경시설 유지보수작업에 따른 장비(차량 등) 운영, 풍수해·제설 및 대기근무 등 복무 작업 지원, 착륙대 및 외곽도로 주변 삭초작업(트랙터) 시행, 이동지역 F.O.D 제거 및 관리지역 구내도로 청소 차량 운행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국공항공사와 ♣♣♣(주) 계약체결(202♣.♣.♣.)

- 따라서 공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을 준수하여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회사 위탁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고유 업무는 자회사에 부당하게 위탁하지 않아야 하고,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 위탁 등을 통해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공사에서는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장비 및 정비직렬’ 업무를 ♣♣⁵⁾와 ♣♣♣⁶⁾ 등 협력업체에 아웃소싱을 하여 용역 계약 형태로 임원(♣♣♣, ♣♣♣) 차량 운용 및 관리업무를 위탁해 왔으며,
 - 201♣. ♣.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기준(관계부처 합동, ‘1♣.7월)에 따라 임원(♣♣♣, ♣♣♣) 차량 운용 및 관리업무와 운전자를 ♣♣♣(주로 위탁 전환⁷⁾하였고,
 - 201♣. ♣. ♣. 체결한 ‘한국공항공사 ♣♣ 전문가 협의회 합의서’ 전문 1. ‘전환대상’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파견·용역근로자를 공사 및 공사의 별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합의서 전문 3. ‘전환방식’에 의하면 소방, 대테러 직무 근로자는 공사로 직접 고용하고, 그 밖의 직무 근로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고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공사에서는 [표4]와 같이 201♣년부터 202♣년까지 매년 자회사인 ♣♣♣(주)와 “공항시설 서비스 위탁관리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5) 201♣.♣.♣.~201♣.♣.♣. 아웃소싱 계약기간

6) 201♣.♣.♣.~201♣.♣.♣. 아웃소싱 계약기간

7) 現 ♣♣ 운전기사는 201♣.♣.♣.~201♣.♣.♣. ♣♣ 협력업체에서 ★★★★★ 전용차량 운전업무를 하였으며 201♣. ♣.♣. 자회사인 ♣♣(주)가 설립되면서 전환채용(제한경쟁)되어 ♣♣-장비정비 소속으로 201♣.♣.♣.~202♣.♣.♣. 감사일 현재까지 ★★★★★ 전용차량 운전업무 담당하였고, 現 ★★★★★ 운전기사는 201♣년~201♣.♣.♣. ♣♣ 협력업체에서, 201♣.♣.♣.~201♣.♣.♣. ♣♣에서 ★★★★★ 전용차량 운전업무를 하였으며 201♣. ♣.♣. ♣♣(주)가 설립되면서 전환채용(제한경쟁)되어 ♣♣-장비정비 소속으로 201♣.♣.♣.~202♣.♣.♣. 감사일 현재까지 ★★★★★ 전용차량 운전업무 담당

협력업체 당시부터 사용하던 과업내용서를 그대로 용역계약서에 사용하여 자회사 위탁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원(★★★★★, ★★★★★) 차량 운용 및 관리업무를 자회사인 ♣♣♣(주)에 부적정하게 위탁⁸⁾ 하였다.

[표4] “공사와 ♣♣♣(주) 위탁용역 계약 체결현황”

(단위 : 원)

연도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금액 중 운전원 노무비용	
			♣♣ 운전원	♣♣ 운전원
20♣년	1. 1. ~ 12. 31.	27,929,069,000	39,298,520	39,450,880
20♣년	1. 1. ~ 12. 31.	66,950,750,000	42,761,740	41,503,590
20♣년	1. 1. ~ 12. 31.	60,359,000,000	47,481,810	43,368,160
20♣년	1. 1. ~ 12. 31.	66,130,870,290	48,889,180	47,190,440
20♣년	1. 1. ~ 12. 31.	68,801,485,460	50,158,560	47,835,030
20♣년	1. 1. ~ 12. 31.	71,093,881,010	12,243,912(1분기)	8,863,899(1분기)

※ 한국항공공사 및 ♣♣♣(주) 제출자료 재구성

- 한편, 공사 ★★★★★(ÅÅÅ)은 본인의 전용차량을 자회사인 ★★★★★(주) 소속 근로자가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⁹⁾ 있었고, ★★★★★(∞∞∞)도 자회사인 ★★★★★(주) 소속 근로자가 본인의 전용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담당 부서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전용차량 운전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사 ★★★★★(ÅÅÅ) 및 ★★★★★(∞∞∞)는 '1♣년도에 자회사 업무위탁 당시 정부 지침¹⁰⁾에 따라 자회사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면서 위탁된 사항으로 정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 임원 차량 운전원 운영방식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개

8) '1♣.♣.♣. 자회사인 ♣♣♣(주)를 설립(1♣.♣.1. 공직유관단체 지정)하면서 협력업체 당시부터 사용하던 과업내용서를 그대로 용역계약서에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의 ★★★★★ 및 ★★★★★ 전용차량 운전업무도 ♣♣♣(주)에 부적정하게 위탁하게 된 것이며, '1♣년 협력업체 당시부터 사용하던 과업내용서를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임원(★★★★★, ★★★★★ 등) 차량 운용 및 관리내용이 그대로 기재된거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

9) 현재 본인의 전용차량은 ♣♣♣(주)의 ♣♣공항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회사 소속 직원이 공사 임원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대해 정년퇴직 또는 결원이 발생할 시 공개채용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서 제출('2♣.♣.)

10)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고용, 그 외 파견·용역업무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1♣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지침)

선 조치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반영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에는 [표5]와 같이 7개 항목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5] “안전관리비 포함 항목(「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항 목	적용일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97.8.25. 신설·시행
2. 영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비용 등 ¹¹⁾	'97.8.25. 신설·시행
3. 발파·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97.8.25. 신설·시행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 비용	'97.8.25. 신설·시행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 비용	'16.5.19.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6.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16.5.19.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7. 무선설비·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비용	'20.3.18.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관련 부칙 재구성

-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항타·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¹²⁾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 등이 조정을 할 수 없도록 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공사에서는 ♣♣공항 국내선 주차빌딩 신축공사(♣차년도)를 시행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는 등 ♣♣♣♣♣ 같이 20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건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는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조정을 할 수 없도록 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로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직원사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관리비용을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에 반영하여 계약상대자가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같이 202♣년부터 202♣. ♣. ♣. 감사일 현재까지 ♣건의 안전관리비가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에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12)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 및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항목은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등이 포함된 순공사원가 항목의 경비에 포함되도록 규정

□ 조치할 사항

○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 ① 앞으로 임직원이 근태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점심시간에 늦게 복귀하거나 조기퇴근을 하는 등 복무규정을 미준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이 누락되거나 원가계산서가 아닌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 ② 자회사에 위탁한 공사 임원(★★★★★, ★★★★★)의 전용차량 운전업무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③ 점심시간에 늦게 복귀하거나 조기퇴근을 하는 등 복무규정을 미준수하고, 임원의 차량 운용 및 관리업무가 자회사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 ∞∞∞, ★★★★★ AAA에 대하여는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④ 안전관리 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는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원가계산서 항목에 별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안전관리비 계상 현황(’2♣. ♣. ~ ’2♣. ♣.)”

1. ♣♣공사

(단위 : 백만원, 건)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 금액 (VAT포함)	안전관리비 대상	
					직접 공사비 반영	미반영
계 (총 17건)					11건	6건
한국공항공사 ♣♣지역 본부 직원사택 신축공사	♣.♣.♣.	♣.♣.♣.	♣.♣.♣.	4,852	12.3	
♣♣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내진보강 및 부대공사(2차년도)	♣.♣.♣.	♣.♣.♣.	♣.♣.♣.	1,346		○
♣♣공항 구)관제탑 시설개선공사	♣.♣.♣.	♣.♣.♣.	♣.♣.♣.	944		○
♣♣공항 렌터카 셔틀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	♣.♣.♣.	♣.♣.♣.	345	2.7	
♣♣공항 이동지역 통합형 휴게시설 신축공사	♣.♣.♣.	♣.♣.♣.	♣.♣.♣.	234		○
♣♣공항 대형버스 주차장 보행캐노피 설치공사	♣.♣.♣.	♣.♣.♣.	♣.♣.♣.	638	1.3	
♣♣공항 관제탑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	♣.♣.♣.	♣.♣.♣.	182	0.1	
♣♣ 화물청사 및 기타건물 보수,보강공사	♣.♣.♣.	♣.♣.♣.	♣.♣.♣.	219	0.5	
♣♣공항 기계 자회사 사무실 개선공사	♣.♣.♣.	♣.♣.♣.	♣.♣.♣.	249	0.4	
♣♣공항 통합주차 관제센터 신설공사	♣.♣.♣.	♣.♣.♣.	♣.♣.♣.	368		○
♣♣공항 신화물청사 변전실 개선공사	♣.♣.♣.	♣.♣.♣.	♣.♣.♣.	127	1	
♣♣공항 웰컴존 조성 공사	♣.♣.♣.	♣.♣.♣.	♣.♣.♣.	259	5.7	
♣♣공항 국제선 주차빌딩 및 기타건물 방수공사	♣.♣.♣.	♣.♣.♣.	♣.♣.♣.	1,054		○
♣♣공항 격리대합실 탐승구 및 기타시설 개선공사	♣.♣.♣.	♣.♣.♣.	♣.♣.♣.	473	1.1	
♣♣공항 관리동 증축 및 기타공사	♣.♣.♣.	♣.♣.♣.	♣.♣.♣.	455	6.4	
♣♣공항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사장 신축공사	♣.♣.♣.	♣.♣.♣.	♣.♣.♣.	366	2.5	
♣♣공항 야외분수대 신규 상업시설 신축 공사	♣.♣.♣.	♣.♣.♣.	♣.♣.♣.	209		○

2. ♣♣공사

(단위 : 백만원, 건)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 금액 (VAT포함)	안전관리비 대상	
					직접 공사비 반영	미반영
계 (총 12건)					11건	1건
♣♣공항 경사면 긴급 복구공사	♣.♣.♣.	♣.♣.♣.	♣.♣.♣.	153		○
♣♣공항 여객주차장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	♣.♣.♣.	♣.♣.♣.	707	17	
♣♣공항-도시계획 도로간 연결도로 조성공사	♣.♣.♣.	♣.♣.♣.	♣.♣.♣.	336	13	
♣♣공항 주차장 확장공사	♣.♣.♣.	♣.♣.♣.	♣.♣.♣.	2,496	12.6	
♣♣공항 항공유 저장소 우수배관 교체공사	♣.♣.♣.	♣.♣.♣.	♣.♣.♣.	112	0.03	
♣♣공항 오수관 시관로 연결공사	♣.♣.♣.	♣.♣.♣.	♣.♣.♣.	274	1.6	
♣♣공항 동력동 담장 보수 및 기타공사	♣.♣.♣.	♣.♣.♣.	♣.♣.♣.	106	0.4	
♣♣공항 관리지역 포장보수공사	♣.♣.♣.	♣.♣.♣.	♣.♣.♣.	287	1.6	
♣♣공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	♣.♣.♣.	♣.♣.♣.	218	0.12	
♣♣공항 주차장 확충공사	♣.♣.♣.	♣.♣.♣.	♣.♣.♣.	385	2.3	
♣♣공항 임시주차장 확장 및 기타공사	♣.♣.♣.	♣.♣.♣.	♣.♣.♣.	209	2.12	
♣♣공항 구내도로 포장보수공사	♣.♣.♣.	♣.♣.♣.	♣.♣.♣.	206	0.33	